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장윤정·지은초

2024. 11.

|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장윤정 부연구위원 · 지은초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200 ✉ yjchang@fis.kr, anncho@fis.kr

요 약

□ (정의 및 국내 현황) 인지 예·결산제도란 특정 정책목표의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파악하고 예·결산 사이클 내에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성인지('10~), 온실가스감축인지('23~)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

- 정책적 의지의 수량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액 중 해당 정책목표에 할당된 부분을 파악,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 의지 촉구 가능
- 호주에서 1984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세계적으로 전파
- 우리나라에서는 인지 예·결산제도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으로 규정·시행
 - 성인지예산은 '11년 전체 예산의 3.3%로 집계되었고, 최대 8.0%('18)에 이르다가 최근 '24년에는 3.7%의 비중 차지(예산안 기준)
 - 다만 제도 운영 차원에서 성인지 성과평가의 구체적 의견 및 반영 계획 마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내실화 등이 현안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3년 69개의 예산·기금사업이 34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23년도 결산서)

□ (추가 도입 논의) 저출생고령화, 장애, 기후, 청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16건의 신규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음
 - 인구(7): 청년, 세대 간, 저출산고령화, 인구변화, 인구증감
 - 분배(3): 소득양극화, 노동인지예산
 - 기타(6): 식량자급, 농어촌, 국가균형, 장애, 규제개혁 등
- (검토보고 요지) 각 의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기존 법률 및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객관적 측정 문제, 형평성 등 지적 필요

- (해외 사례 검토대상)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성인지, 환경인지 예·결산제도와 추가 도입 논의가 있는 분배, 장애, 인구, 지역형평 인지 예·결산제도의 주요국 시행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시행현황은 OECD조사가 시행된 2022년 기준, 상세사례는 2024년도 기준으로 조사

〈해외 사례 검토범위〉

	시행현황	상세 사례
성인지	OECD 38개국(OECD '22년도 조사)	호주
환경인지	OECD 36개국(OECD '22년도 조사)	프랑스, 이탈리아
분배인지	G7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자체 조사)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기타 (장애, 인구, 지역)		영국(장애), 캐나다(장애, 세대 간), 뉴질랜드(아동), 프랑스(지역)

- (성인지 시행 현황) '22년 OECD 조사 결과 38개국 중 23개국이 성인지예산을 시행*한다고 응답했으나, 별도 예산서 작성은 10개국, 결산서 작성은 4개국에 그침

* 예산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절차 유무가 기준이며, 시행 응답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준하는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성인지예산 시행 국가는 '16년 12개, '18년 17개, '22년 23개(38개국 중 61%)
- 법적 근거에 의해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22년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23개국 중 한국, 캐나다, 노르웨이를 포함해 14개국(61%)
 - '18년도 9개 국가(17개국 중 53%)에서 '22년도 14개 국가로 증가
 -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10개국*이 예산안의 첨부 또는 부록 형태나 독립된 별도의 성인지예산을 연간 예산과 함께 발행, 공개하고 있음
- *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성인지결산서를 연간 발행, 공개하는 국가는 4개국(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

구분	기본예산법 또는 기타 법률	조례/규정	헌법	기타	없음
국가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멕시코	일본 스웨덴 튀르키예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합계	12(52%)	3(13%)	2(9%)	3(13%)	3(13%)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4.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과 연간 일반 예산안 연계 형태〉

	예산안의 일반적 기술에 포함	예산안 첨부 또는 부록	독립된 성인지예산	별도의 장에서 성인지예산 논의	연간 예산과 함께 정보 제공 하지 않음	기타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합계	9(39%)	6(26%)	5(22%)	4(17%)	4(17%)	1(4%)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9.

** 음영 표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별도 예산서를 작성, 첨부하는 10개 국가

〈OECD 주요국의 정부 출간 성인지 예·결산 자료 현황〉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연간보고서 상 사후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차원 성과감사 측정 보고서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목표달성 성과보고서	성인지 지출검토 보고서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아일랜드
합계	6(26%)	4(17%)	4(17%)	4(17%)	3(13%)	2(9%)

주: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국가 중 11개 국가만 위 표에 기재되어 있음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11.

** 음영 표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별도 결산서를 작성, 첨부하는 4개 국가

- (호주의 성인지예산)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 중
 - 재무부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장관이 공동으로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를 작성하여 연도별로 예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및 공개
 - 1984~85회계연도에 최초로 성인지예산분석(gender-sensitive budget)을 발간한 뒤 1987년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로 변경
 - 법적 근거 미비로 1997~2007년에 이르는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최초로 여성 인지도예산서 발간 축소 및 중단,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음
 - 2019년 노동당 정부 재집권 이후 재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발간 지속

□ (환경인지 시행 현황) '22년 OECD 조사 시 36개국 중 24개국이 환경인지 예산(녹색 예산)을 시행*한다고 응답했는데, 재무부서가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5개국으로 조사됨

* OECD 38개국에 설문지 배포, 36개국으로부터 응답 접수, 24개국에서 녹색예산 시행

- 시행 응답 국가는 '21년 조사 대상 35개국 중 14개국(40%), '22년 조사 대상 36개국 중 24개국(66%)으로 증가
- 녹색인지예산 시행 근거로 법률보다 변경 사항 적용의 유연성이 높은 행정절차를 선호
 - 법적 근거에 의해 녹색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 중 46%인 11개국
 -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는 재무 부서에서 별도의 녹색예산서 작성
 - 재무부서에서 회계연도별로 별도의 녹색결산서를 작성하는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는 2024년 현재 확인 불가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

국가	행정절차	기타 법안	예산법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합계	21(88%)	14(58%)	11(46%)

* OECD(2024),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 (프랑스의 녹색예산) 예산 법안과 함께 녹색예산서(budget vert)를 2019년부터 작성, 발표하고 있으나 녹색인지결산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산 발표 시 재정법¹⁾에 따라 매년 예산안과 동일한 위계로 ‘국가예산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²⁾ 발표
 - 다만 프로그램별 예·결산차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이외에 우리나라의 인지결산서에 해당하는 정책 영역별 결산안 부속서류는 발간하지 않음
- * 조세지출계획을 포함한 프랑스의 2024년 예산안 5,697억 유로 중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친화적인 예산은 397억 유로
- (이탈리아의 환경인지 예·결산) 2009년 이후 환경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작성 및 발표하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잠정 중단되었음
 - 1990년부터는 예산안 단계에서 환경 관련 예산의 규모를 집계 및 발표하였고 2009회계연도부터는 실제 지출액(결산액)에 대해서도 작성
 - 예·결산서 부속서류로 각각 ‘환경예산(Ecobilancio)’과 ‘환경결산서(Ecorendiconto)’를 작성하여 발표

1) projet de loi de finances, PLF

2) Rapport sur l’impact environnemental du budget de l’État

□ (분배인지 유사 사례) 2024년 발간된 ‘예산제도를 통한 불평등 교정(A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은 OECD 주요국의 양극화 및 분배개선을 위한 예산제도 사례 수록

- 정부가 예산 과정에서 양극화 완화 및 분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는 8개 국가의 사례를 소개
 - OECD 고위급 예산당국자(SBO) 논의를 통해 8개의 주목할 만한 국가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환경인지예산이나 성인지예산의 경우와 같은 조사 과정은 거치지 않음
 - 8개국 목록: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 양극화와 불평등이 소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산사업에 대해 빈곤영향평가, 지역영향평가, 장애영향평가 등 시행
- (아일랜드의 평등예산) '18년부터 평등 예산제도(Equality budgeting) 도입, 시행
 - 불평등의 차원을 소득, 장애, 지역, 성별 등으로 구분하고 범부처 네트워크 및 재정부가 관리하는 전문 연구기관(ESRI)에 의해 연도별 예산사업에 사전 평가 시행
 - ‘평등예산 범부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분배 영향평가, 빈곤영향평가 등을 예산 과정에서 연도별로 시행
 - 해당 평가 결과를 ‘2024 budget-quality of life assessment’라는 서류에서 녹색예산과 같은 위계로 다루고 있음
 - 2024년 예산안은 평균 가구소득을 2.1%가량 증가시키며, 소득분배에 누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장애인지 유사 사례) UNDP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기반 장애포괄예산 가이드라인을 2024년 발표³⁾

-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조약
 - UN은 2006년 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협약에 가입, 2009년 발효
- 장애포괄예산은 예산의 전 과정에 장애인의 관심, 요구, 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 재정 전략
 - 동 보고서는 중장기적 장애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장애 관련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소개했으나, 장애와 관련된 예·결산서를 별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의 제도는 소개 부재
- (캐나다의 장애인지예산) 성인지예산서를 확장한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향 보고서’⁴⁾를 통해 장애, 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 효과 확인
 - ‘18년 개정된 성인지예산법⁵⁾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예산 영향 분석 (Gender-based Analysis Plus, GBA+) 실시, 예산서와 함께 연례 보고서 발표
 -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향 보고서’는 다양성 지표의 영향 분석 결과, 분석 대상별 예산 비율 등 공개
 - * 삶의 질, 분석시기, 성별, 소득구간, 세대 간, 성별 결과 프레임워크 등 분석
 - 다양성 지표를 정의하는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Gender Results Framework)는 국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 외 정체성 요소의 하나로 장애를 포함
 - 성별에 대한 기본 분석에 장애 여부의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연도별 보고서에서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 및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고려한 정책 수 확인 가능

3) UNDP(2024) 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4)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5)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 '24년 기준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는 전체의 10%,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은 50건으로 나타남

□ (인구인지 유사 사례) 세대 간 분배, 아동, 저출생, 인구구조 등을 예산 과정에서 고려하는 사례 존재

- (캐나다의 세대인지예산) 예산사업의 수혜 대상을 청년-중년-장년으로 나누어 위에 언급한 예산 영향 보고서에 수록
 - 성별에 대한 기본 분석 및 세대별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젠더 결과 프레임 워크 설계
 - '24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미래 세대에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투입될 예정
- (뉴질랜드의 아동빈곤보고서) 재정책임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예산안 제출 시 아동빈곤 감소 정책 현황, 연관 재정사업과 관련 지표 추세를 담은 보고서 작성, 제출
 - '17/18회계연도부터 10년 장기 아동빈곤율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3년차 ('21/22)에 주요 3개 아동빈곤 지표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목표 달성 진행 중
 - '23년 예산은 빈곤가족의 가계지원사업(약 25억 달러)이 중점
- (기타)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인구인지예산을 시범적용한 바 있으며, 이외에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장기 경제·재정 전망보고서가 조사 대상 국가 전반에서 생산
 - 미국(장기재정전망), 호주(세대 간 보고서), 독일(안정화계획), 영국(지속가능성보고서) 등

□ 다양한 국가에서 성인지 및 환경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소수

- 법적 근거에 따른 성인지 및 환경인지 예산제도 시행국은 각각 14개, 11개국

- 성인지예산 10개국, 환경인지예산 5개국에서 예산서 작성, 성인지결산서의 경우 4개국(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에서만 작성 중

□ 일부 국가에서 분배,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시행 중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결산서 작성 국가는 부재

- 젠더(성인지),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삶의 질(Wellbeing) 인지 예·결산 제도 내에서 장애, 소득격차, 세대 간 평등 등의 주제를 통합하여 운영
- 캐나다는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에 따라 부처별 연간 성과보고서(Departmental Results Report) 한 장에 해당 연도 재정사업의 성별, 세대별, 장애 여부별 수혜 분석

〈주요국의 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성인지, 환경인지 제외)〉

구분		인구(청년)	분배 ¹⁾	국토균형발전	장애 ²⁾
G7	미국	-	-	-	-
	일본	-	-	-	-
	독일	-	-	-	-
	영국	-	-	-	장애포용종합전략
	프랑스	-	경제사회재무보고서	정책현안보고서	-
	이탈리아	웰빙예산	웰빙예산	-	-
	캐나다	예산(GBA+)	예산(GBA+)	-	예산(GBA+)
기타 국가	뉴질랜드	웰빙예산	웰빙예산	-	-
	아일랜드	-	평등예산	-	-
	호주	-	-	-	포괄적장애전략
	스웨덴	-	분배정책보고서	-	-
	네덜란드	-	경제예산영향분석	-	-

주 1) OECD·조세재정연(2024), Addressing inequality by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2) UNDP(2023), Leaving No One Behind: A Review of Policies Promoting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장애 전략은 2년 이상 주기로 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
 3) 굵은 글씨는 해당 문서가 대국민 예산서 또는 첨부서류의 위상임을 의미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인지 예·결산제도 시행¹⁾국가〉

	조사대상국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성인지	OECD 38개국('22)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10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4개국)
환경인지	OECD 36개국('22)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5개국)	한국, 이탈리아(~'23) ²⁾
분배인지	G7+4개국 ('23~'24)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6개국)	없음
기타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인구 및 세대간 3개국), 캐나다(장애 1개국), 프랑스(지역 1개국)	없음

1) 재무부서가 중앙정부 단위 인지 예·결산서를 별도 작성, 공개하는 국가

2) 이탈리아는 재무부서가 연간 환경예산서도 '23년도까지 작성해 왔으나 본 연구가 참고한 OECD 2022 survey of green budget에서는 재무부서에 의한 예산서 작성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음.

□ 현행 및 도입 논의 중인 인지 예·결산제도 대상 행정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 제고 필요

- 행정적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성, 행정비용, 유사한 목적의 타 정책수단 유무 고려 필요
 -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수립 및 시스템 운영비용 대비 기대효과, 유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향평가, 기본계획 이행 점검과의 업무 중복 등 수반되는 행정비용 고려 필요
-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리체계, 법·제도, 지표체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음
 - 투입지표 중심에서 중기적 성과지표로 관리 관점 이동 및 국가재정법 중심으로 법제 일원화, 제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 등 고려
 - 주요국 인지 예·결산제도는 중장기 정책의제의 예산 투입과 지표 개선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지표체계 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 도모

목 차

I. 인지 예·결산제도 개관	1
1. 제도의 정의	1
2. 우리나라의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2
II. 해외 사례	20
1. 성인지 예·결산제도	20
2.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26
3. 분배 인지 예·결산제도	33
4.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42
5.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50
6. 기타 사례	58
III. 시사점	61
〈참고문헌〉	65
〈부표 1〉 제21대 국회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안 16건 목록	67
〈부표 2〉 성인지 예·결산제도 국가별 개요	70
〈부표 3〉 환경인지 예·결산제도 국가별 개요	74

표 목차

- 〈표 I-1〉 「국가재정법」의 성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3
- 〈표 I-2〉 「국가회계법」의 성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4
- 〈표 I-3〉 「국가재정법」 제정 이유 중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내용 5
- 〈표 I-4〉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5
- 〈표 I-5〉 성인지 예·결산 금액 추이 6
- 〈표 I-6〉 202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7
- 〈표 I-7〉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과목표 달성을 추이 8
- 〈표 I-8〉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주요 성과 8
- 〈표 I-9〉 「국가재정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10
- 〈표 I-10〉 「국가회계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11
- 〈표 I-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12
- 〈표 I-1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금액 추이 12
- 〈표 I-13〉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13
- 〈표 I-14〉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14
- 〈표 I-15〉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정량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14
- 〈표 I-16〉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과 검토 요지 17
- 〈표 I-17〉 양극화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과 검토 요지 18
- 〈표 I-18〉 기타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과 검토 요지 19
- 〈표 II-1〉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 21
- 〈표 II-2〉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방법 및 도구 22
- 〈표 II-3〉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방법의 변화(’16~’22) 22
- 〈표 II-4〉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정부 보고자료 발간 현황 23

표 목차

〈표 II-5〉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 26

〈표 II-6〉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 방법 및 도구 27

〈표 II-7〉 프랑스 2019년 재정법, 법률 제2018-1317호 30

〈표 II-8〉 이탈리아 중앙정부 기준 2022년 환경 관련 지출 가능 잔액 32

〈표 II-9〉 지출 및 예산 결정 시 분배 영향평가 및 관련 분석 시행 형태 34

〈표 II-10〉 영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49

〈표 II-11〉 뉴질랜드 아동빈곤보고서의 측정 지표 52

〈표 II-12〉 워싱턴DC의 인종 간 평등 예산 체크리스트 60

〈표 III-1〉 조사대상 인지 예산제도 예산서 사례 62

그림 목차

<그림 II-1> 호주의 2024-25 예산 및 관련문서 공개 홈페이지 25

<그림 II-2> 2024-25 호주 예산상 여성예산 보고서(Women’s budget statement) 구성 26

<그림 II-3> 프랑스의 국가 연간 예산 중 친환경 예산 식별 결과 30

<그림 II-4> 환경 관련 지출의 부처별 분포 33

<그림 II-5> 정부 임기 중 개혁에 따른 10분위별 평균 효과 36

<그림 II-6> 네덜란드 최근 연합정부 합의 예산에 따른 분배영향 분석 결과 38

<그림 II-7> 아일랜드 2024 일반회계 예산의 소득 10분위별 혜택 분석 결과 41

<그림 II-8> 아일랜드 예산 ‘삶의 질 평가’ 보고서의 목차 41

<그림 II-9> 캐나다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장애 요소 반영 사례 44

<그림 II-10>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 44

<그림 II-11>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직간접적 장애 요소 반영 정책 수 45

<그림 II-12> 2024/25 호주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46

<그림 II-13> 호주의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의 성과목표 46

<그림 II-14> 호주의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의 성과목표 대시보드 47

<그림 II-15> 영국의 장애포용을 위한 종합전략 프레임워크 48

<그림 II-16>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세대 간 요소 반영 사례 51

<그림 II-17>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세대 간 예산 혜택 비중 51

<그림 II-18> ’24년 아동빈곤보고서 중 아동빈곤지표의 추세와 전망 53

<그림 II-19> 호주의 재정수입(붉은색)과 지출(파란색)의 GDP 대비 비중 장기 전망 54

<그림 II-20> 호주 2023 세대 간 보고서 목차 구성 55

<그림 II-21> 미국의 장기 부채 전망 56

<그림 II-22> 미국 2024~2054 장기 전망 보고서 목차 구성 57

<그림 II-23> 프랑스 국토정비인지예산 보고서 표지 및 내용 중 관련 예산 일람표 59

I. 인지 예·결산제도 개관

1. 제도의 정의

인지 예·결산제이란, 어떤 사회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자원 배분과 추진 성과를 예·결산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정부의 예산 투입은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다. 또한 정부 예산의 크기는 해당 사회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 의지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연간 지출하고 있는 예산 중 얼마만큼이나 해당 목표 실현에 투입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공개하는 것은 여러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면, 예산 결정 체계에 대한 지지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부터 해당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해당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연관성과 영향력을 따져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회계연도 말 결산 시에 실제 투입된 재정의 규모와 성과를 예산 시점과 비교함으로써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재정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인지 예·결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예산프로그램(Women's Budget Program)으로 처음 시행되고, 이 사실이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 의해 성평등 정책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인지 예·결산제도와 성인지예산이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인지 예·결산제도는 해당 목표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출 사업 중 해당 정책목표와 관련 있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인지 예·결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확산과 함께 발전해 온 만큼 예산 순기 전반에 걸쳐서 해당 정책의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예산배분의 초기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각국의

실제 시행 내용을 보면 태깅, 사전/사후 영향평가, 감사, 지출검토 등 예산 전 과정에서 평가를 포함하며 흔히 이해되고 있는 바와 달리 예·결산서 작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인지 예·결산제도와 결부된 정책목표는 호주의 사례처럼 양성평등이 가장 첫 사례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UN과 같은 국제기구도 성인지예산 방법론을 개발하고 전파하였으며 이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에 양성평등이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이었다. 2010년 이후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의 정책의제들이 인지 예·결산제도와 결부된 정책목표로 여겨졌다. 2020년을 전후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적인 정책목표가 되면서 현재는 환경인지예산, 기후인지예산 등이 국제기구와 각국 재무부에 의해 전파, 도입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1) 법적 근거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가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예산의 원칙을 설정했다. 여섯 가지 예산 원칙 중 다섯 번째 원칙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26조, 제34조에 따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7조, 제71조를 근거로 기금에 대한 성인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포함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7조, 제73의2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 및 기금결산 작성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표 I-1〉 「국가재정법」의 성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성인지예산서

제3장 결산

제57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6조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결산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통해 결산 및 기금결산의 개요, 예산 및 기금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 성인지결산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I-2〉 「국가회계법」의 성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국가회계법」 제3장 결산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성인지 기금결산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2)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초기 「국가재정법」(2006.10.4. 제정, 2007.1.1. 시행)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예산의 효과 평가와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함을 예산의 원칙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조항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부터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적용하였다. 이후 2011회계연도에서 처음으로 2010회계연도의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되었다.

〈표 I-3〉 「국가재정법」 제정 이유 중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06.10.4. 제정 2007.1.1. 시행	제정 이유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u>성인지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u>
	해당 본문	제16조(예산의 원칙)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9호 성인지예산서 제57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1항제4호 성인지결산서 제61조(결산의 국회제출) 부칙 제5조(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 매년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업유형 항목에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여부를 기재하도록 개편했다. 2019년에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여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기재하고, 2023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부를 기재하는 등 사업유형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표 I-4〉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06년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 201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2009년	•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최초 작성
2010년	•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연도	주요 내용
2011년	• '11년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최초 작성 • '11년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11년 이후 매년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
2018년	• 사업유형 항목에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여부 기재하도록 개편
2019년	• 사업유형 항목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여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기재하도록 개편
2023년	• 사업유형 항목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여부 기재하도록 개편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12.),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7p. 재구성.

성인지결산서에 따른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따르면 총 7조 4,20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후 4년 만인 2014회계연도부터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22조 6,0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7회계연도에서 31조 2,697억 원, 가장 최근인 2023회계연도에서 31조 5,375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 예산의 최소 3.3%('11회계연도)에서 최대 8.0%('18회계연도)까지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기준 96.3%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표 I-5〉 성인지 예·결산 금액 추이

(단위: 조원, 개)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	7.3	10.2	10.7	13.3	22.4	26.2	27.8	29.6	34.4	25.4	31.8	35.3	26.9	33.2	24.2
집행액	7.4	10.3	11.4	13.7	22.6	26.4	28.4	31.3	35.2	27.1	34.6	36.3	26	31.5	-
기관 수	29	34	34	35	42	42	43	42	41	33	36	38	39	38	40
세부사업 수	195	241	254	278	339	343	331	350	345	261	281	304	341	302	282

자료: 각 연도 성인지 예·결산서.

* 2024년은 예산 기준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는 총 38개 기관 대상 30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 규모 32조 7,340억 원 중 31조 5,375억 원이 집행되었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총 40개 기관 대상 28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총 예산·기금 규모 24조 1,966억 원이 편성되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의 성장과 성인지 제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초기에 비해 점차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대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6〉 202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구분		'22년 집행액 (A)	'23년			'22년 대비 (C-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B)*100	
합계	집행 규모(억원)	259,626	327,340	315,375	96.3	55,749
	기관 수(개)	39		38		△1
	사업 수(개)	341		302		△39
예산 (일반·특별회계)	집행 규모(억원)	101,051	90,979	88,876	97.7	△12,175
	기관 수(개)	39		38		△1
	사업 수(개)	244		214		△30
기금	집행 규모(억원)	158,575	236,361	226,500	95.8	67,925
	기관 수(개)	13		14		1
	기금 수(개)	28		28		-
	사업 수(개)	97		88		△9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4p.

3)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과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 양성평등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기준 ①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② '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한 사업, ③ '24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④ 기타 부처가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따른 성과목표 수는 2011년 기준 265개에서 최근 2023년 기준 383개로 12년간 약 1.4배 증가했다.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률 또한 2011년 68.3%에서 2023년 79.4%로 11.1%p 증가했다.

〈표 I-7〉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성과목표 수(개)	265	311	352	420	423	432	455	438	331	360	380	437	383
달성 수(개)	181	221	257	289	300	298	306	315	239	250	295	356	304
달성률(%)	68.3	71.1	73	68.8	70.9	69	67.3	71.9	72.2	69.4	77.6	81.5	79.4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12.),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9p.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따르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사업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여성 장애인 및 여성 인력채용률, 여성 예비창업자 창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달성했다.

〈표 I-8〉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주요 성과

사업명	내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노동부)	• 여성 장애인 참여율(%): ('21년) 39.9 → ('22년) 40.3 → ('23년) 40.0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 인력채용률(%): ('23년 목표치) 34.1% → 38.4% 달성 • 여성 예비창업자 창업률(%): ('23년 목표치) 80.0% → 97.0% 달성

사업명	내용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 남성 육아휴직자 수(명): ('21년) 29,041 → ('22년) 37,885 → ('23년) 35,336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여성가족부)	• 새일센터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21년) 69.8 → ('22년) 73.2 → ('23년) 78.8 •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21년) 85.4 → ('22년) 86.2 → ('23년) 86.8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펀드 여성 대표자 투자실적(개): ('21년) 3 → ('22년) 6 → ('23년) 7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7-8p.

또한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확인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사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급여지원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달성하여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가족부)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다변화, 다부처 협업 취업 지원서비스 신규 도입, 인턴지원 확대 등 선순환 구조(인력양성-일경험-지속고용)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개선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출자(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성인지적 사업 운영으로 여성 경영체 대상의 투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1) 법적 근거

2022년 시행된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에서는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2021.6.15. 신설). 「국가재정법」 제27조와 제34조는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

고 있으며, 제68조의3, 제71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7조의 2, 제73조의3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9〉 「국가재정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3장 결산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제15조의2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 시행령」의 제5조에서는 결산 및 기금결산의 개요, 예산 및 기금의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 결산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표 I-10〉 「국가회계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법적 근거

「국가회계법」 제3장 결산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가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2023회계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제출되었다.

〈표 I-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21년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23회계연도부터) •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운영전략위원회 보고 • 관계부처 합동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2022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기재부 훈령 제610호) • '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국회 제출
2023년	• '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마련 • '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국회 제출 • '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4.4.),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 2p.

〈표 I-1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금액 추이

(단위: 조원, 개)

구분	2023(예산)	2023(결산)	2024(예산)
규모	11.9	10.6	10.9
기관 수	13	13	16
세부사업 수	288	287	294

자료: 각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13개 중앙관서에서 총 287개의 세부사업이 제출되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총 10조 5,701억 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집행하여 91.5%의 집행률이 나타났으며,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8조 7,857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0.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2024회계연도에는 16개 기관에서 총 294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조 8,776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편성했다.

〈표 I-13〉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기관 수(개)	사업 수(개)
합계	집행 규모(억원)	115,502	105,701	91.5	13	287
	(감축예산)*	(97,495)	(87,857)	(90.1)		
예산 (일반·특별회계)	집행 규모(억원)	57,823	49,827	86.2	10	94
	(감축예산)	(55,253)	(47,354)	(85.7)		
기금	집행 규모(억원)	57,679	55,874	96.9	7 (7개 기금)	193
	(감축예산)	(42,241)	(40,502)	(95.9)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4p.

* 세부사업 내 여러 내역사업 중에서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 규모

예산사업 중 집행 규모가 큰 기관은 환경부로 3조 452억 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으로 집행했으며, 주요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1조 9,089억 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4,950억 원),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3,919억 원) 사업으로 나타났다. 기금사업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이 2조 1,405억 원을 집행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부문 26개 사업, 저탄소생태계 조성 부문 19개 사업, 공정한 전환 부문 12개 사업, 탄소중립 기반구축 부문 91개 사업 등 총 149개의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성과

2023회계연도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및 기금사업을 포함한 총 449개의 성과목표 중 335개(74.6%)를 달성하였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환경부는 34개의 성과목표 중 23개를 달성하여 67.6%의 달성률을, 가장 많은 사업을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221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169개를 달성하여 76.5%의 달성률을 보였다.

〈표 I-14〉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 여부	
		달성(B)	달성률(%) (C=B/A)
합계	449	335	74.6
예산사업(개)	158	113	71.5
기금사업(개)	291	222	76.3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4p.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2023회계연도 기준 63개로 총 287개 사업 중 2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을 측정한 결과, 2030년까지 총 2,672만 2,000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q)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5〉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정량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구분	사업 수(개)	단년도 감축량('23년) (천톤CO ₂ eq)	누적 감축량(~'30년) (천톤CO ₂ eq)
합계	69	3,440	26,722
예산사업(일반·특별회계)	30	1,700	13,882
기금	39	1,740	12,840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4p.

다. 최근의 추가 인지 예·결산제도 논의 동향

관심 정책 분야 추진을 위해 인지 예·결산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 근거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양쪽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인지 예·결산제도의 신규 도입이

제안될 때는 두 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동반 발의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절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두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최근의 개편 논의와 지난 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안을 크게 네 가지로 묶어 제시한다.

1) 기존 인지 예·결산제도 논의 동향

우리나라는 성인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채택하여 법적 근거하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여부 반영, 중점사업, 성평등지수 분야 기재, 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인지예산 담당자의 전문성과 젠더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하고, 사업 영역별로 가진 젠더 이슈를 정확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개선 방안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과 성인지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의견 및 반영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혔다. 이 중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2024)의 분석 결과는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중기 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주문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경우,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법률안 중 제도의 변경 및 유사 제도의 신설 논의가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고 있어,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의 명칭을 기후인지로 변경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⁶⁾ 또한 예산의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탄소감축성과예산제도 신규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논의도 제기되었다.⁷⁾

국회예산정책처(2023)의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면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선정 검토와 각 부처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축사업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24)은 대상사업 관리 강화 및 선정 기준의 명확화,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도입,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제고와 NDC에 따른 유형분류 적용 등을 논의하였다.

2) 인지 예·결산제도 신규 도입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이에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회자되면서 예산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성과목표 설정, 사후적으로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 재정자원의 사용이 현세대에 특히 유리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세대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인구증감인지, 청년인지, 세대인지, 저출산고령화인지, 인구변화인지 등으로 세 부적인 명칭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예산이 세대 간 고르게 사용되는지, 저출생

6)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863)(2023.09.27.)

7)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43)(2021.03.19.)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예산순기에 맞추어 점검하고 예산 활용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는 도입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지·결산제도를 도입한 외국 사례가 없으며 효과 분석이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I-16〉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정일영(민) 외 11인 2122460	'23.6.2.	저출산 대응기금 예·결산서	-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음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서의 실효성 지적
윤준병(민) 외 13인 2121855	'23.5.9.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이종배(국) 외 10인 2110496	'21.6.1.	저출산고령화 예·결산서	- 저출산·고령화 개선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장경태(민) 외 10인 2108469	'21.3.2.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특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강훈식(민) 외 10인 2103529	'20.9.7.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태영호(미) 외 11인 2101243	'20.7.1.	청년인지 예·결산서	- 청년사업 특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특정 연령대를 위한 분석·평가이므로 형평성 논란 존재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윤호중(민) 외 17인 2100497	'20.6.15.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주) 의안번호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음영표시한 장경태 의원안과 강훈식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준.

다음으로, 자산 및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예산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산이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쓰이는지 예산 과정에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담아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아래 3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 검토의견은 현실적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표 I-17〉 양극화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영진(민) 외 10인 2124909	'23.9.27.	소득재분배인지 예·결산서	- 소득불평등의 개선 효과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평가 해외 사례 부재
우원식(민) 외 14인 2124893	'23.9.27.	노동인지 예·결산서	- 노동기본권 등의 개선 영향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노동인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 달성 가능
조정훈(시) 외 17인 2104266	'20.9.25.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서	- 소득양극화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분석틀 마련 필요

또한 예산이 장애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치료,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애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지역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논의, 규제개혁 인지 예·결산서 도입 논의 등이 존재하지만 검토보고서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주요 목적이 유사한 법률 및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인지 예·결산제

도 도입 시 유사·중복성 문제 발생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인지 예·결산제도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관련된 사업을 식별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노동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소관 정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사회 문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요인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범위 식별이 모호하다는 점을 든다. 또한 개별 특성 및 효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인지 예·결산서 분석 대상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외의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년인지 예·결산서는 청년에 집중함으로써 노인 문제와의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이다.

〈표 I-18〉 기타 인지 예·결산서 도입법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이용빈(민) 외 12인 2118580	'22.11.30.	장애인지 예·결산서	-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제도의 구체적 설계 필요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발생 - 현행 성인지 및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
최혜영(민) 외 10인 2116790	'22.8.5.	장애인지 예·결산서	
윤미향(무) 2121730	'23.4.28.	농어촌 인지예·결산서 신규 작성	-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평가 및 분석 실시 중 - 특정 분야에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우려 존재
전봉민(미) 2100719	'20.6.19.	국가균형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국가예산의 지역별 수혜 공개 후 불필요한 논쟁 발생 우려, 비효율 증대 - 지역 발전 연관성이 없거나, 국가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존재 -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에서 국가균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부재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승남(민) 외 21인 2119831	'23.2.6.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사안의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 전체 종합분석 불필요 -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 영향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 선행될 필요
김선교(미) 외 11인 2101666	'20.7.8.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서	- 규제가 법령 형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예·결산과 직접 연계하여 분석·평가하기 어려움 - 유사 목적 제도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공표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운영

II. 해외 사례

1.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인지예산 시행 국가는 '16년 12개, '18년 17개, '22년 23개(38개국 중 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6년 34개국 중 12개국(35%)에서 2배가량 증가한 '22년 38개국 중 23개국(61%)으로 확산된 것이다. 여기서 성인지예산 시행이란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관리도구의 활용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다.('22년 OECD의 성인지예산 조사상 정의)⁸⁾

'22년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23개국 중 헌법이나 예산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는 한국, 캐나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14개국(61%)이며, '18년도 9개(17개국 중 53%) 국가에서 '22년도 14개 국가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의 수도 증가했다.

8) 이하의 내용은 작성일 현재 최신 자료인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II-1〉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

구분	기본예산법 또는 기타 법률	조례/규정	헌법	기타	없음
국가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멕시코	일본 스웨덴 튀르키예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합계	12(52%)	3(13%)	2(9%)	3(13%)	3(13%)

*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4.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및 방법론으로써 사전 영향평가, 식별(태깅), 지출검토, 성과감사 등이 국가별로 사용된다. 두 가지 이상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하는데, 캐나다·아일랜드는 7개, 아이슬란드 6개, 오스트리아·프랑스·멕시코·노르웨이는 5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인지 성과예산제도, 성인지예산 태깅,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평가 및 성과 감사 4개의 세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도구별로 보면 성인지 성과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12개로 이용 국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11개), 성인지예산 태깅(10개),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10개) 등이었다.

〈표 II-2〉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방법 및 도구

	성인지 성과예산 제도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태깅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예산의 성인지 영향평가	조세 및 복지 분배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평가 및 성과감사	성인지 지출검토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합계	12(52%)	11(48%)	10(43%)	10(43%)	9(39%)	8(35%)	7(30%)	3(13%)

자료: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7.
주: 성인지예산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국가 중 호주는 예산의 방법론이나 도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위 표에서 누락

〈표 II-3〉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방법의 변화('16~'22)

	2016년	2018년	2022년
성인지예산 시행 국가	12	17	23
성인지 성과예산	8	10	12
성별영향평가(사전·사후)	10	14	13
성별 조세 및 복지 분배	6	7	8
성인지 지출검토	2	4	3

자료: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Table 2.1.

성인지예산 편성 및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장려를 위해 각국의 정부는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국가의 26%는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

〈표 II-4〉 OECD 주요국의 성인지예산 정부 보고자료 발간 현황

	사후 성인지 영향평가	연간보고서 상 사후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차원 성과감사 측정 보고서	사전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목표달성 성과보고서	성인지 지출검토 보고서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아일랜드
합계	6(26%)	4(17%)	4(17%)	4(17%)	3(13%)	2(9%)

자료: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Figure 2.11.

주: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국가 중 11개 국가만 위 표에 기재되어 있음

가. 국가별 사례

1) 호주

호주에서는 현재 성별 책임 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가 성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 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는 재무부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연도별로 예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호주는 관료 사회에 진입한 페미니스트 집단(Femocrat)에 의해 성인지예산 이니셔티브가 40여 년 전 신설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84-85회계연도에 최초로 성인지예산분석(gender-sensitive budget)이 발간되었으며 1987년에는 여성 인지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로 변경되었다. 당시 성인지예산서는 총리실 산하 여성지위실(Office of Status of Woman)의 주도로 각 부처 업무와 관련한 여성의 지위, 양성평등 사업, 일반정책이나 사업 참여자의 성비와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 정도, 향후 계획 등을 망라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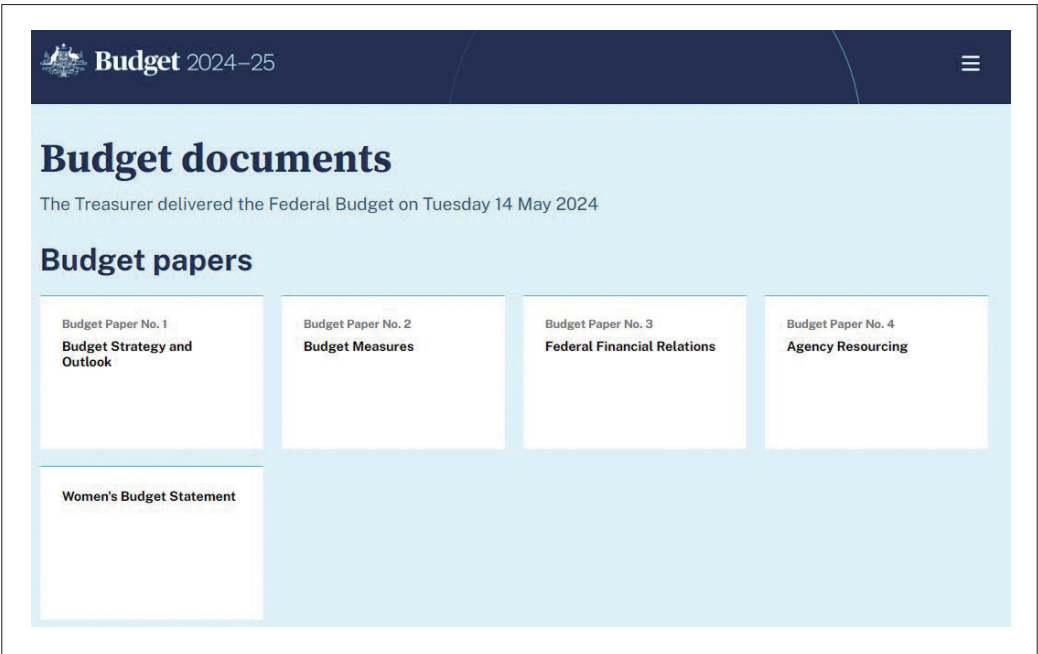
그런데 1997~2007년에 이르는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여성지위실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던 통계청 내 여성통계과가 폐지되는 등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지예산서 발간이 축소 및 중단되기도 하였다. 300페이지에 달하던 예산서가 13페이지의 책자로 간소화되거나, 그마저도 발간이 중단된 것이다. 이후 2008년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으나 꾸준히 부침을 겪었다. 2022년부터는 여성의 평등과 안전을 위한 예산 할당이자 중기 성과계획서 성격의 ‘여성인지예산’ 작성을 재개하였다.

호주의 성별영향평가는 내각제출서류(Cabinet Submissions)와 신규사업제안서(New Program Proposal)의 첨부가 의무화되어 있다. 각 부처는 자체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예산이 성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간된 2024-25 여성예산서는 중기 예산에 포함된 여성 평등 달성을 위한 예산 내용을 주요 정책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성 기반 폭력 방지, 무노동 돌봄, 경제적 평등과 안전, 건강, 리더십과 대표성 및 의사결정 등 다섯 가지 영역이다.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은 상이하며, 2023-24 여성예산서는 여성의 경제적 평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 여성 리더십 함양, 여성 건강 정책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성 기반 폭력 방지 정책을 예로 들면 2024-25 예산 및 중기 예산에서 성 기반 폭력 방지를 위해 1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폭력 이탈 프로그램에 6년간 9억 2,520만 달러를 투자하여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긴급 쉼터를 포함해 최대 5,000달러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II-1〉 호주의 2024-25 예산 및 관련 문서 공개 홈페이지



자료: <https://budget.gov.au/content/documents.htm>

〈그림 II-2〉 2024-25 호주 예산상 여성예산 보고서(Women's budget statement) 구성

 Budget 2024-25 WOMEN'S BUDGET STATEMENT Statement by Senator the Honourable Katy Gallagher Minister for Finance, Minister for Women, Minister for the Public Service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nd The Honourable Jim Chalmers MP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For the information of honourable members on the occasion of the Budget 2024-25 14 May 2024	Contents Foreword 1 Overview 5 Gender-based violence 5 Unpaid and paid care 6 Economic equality and security 7 Health 7 Leadership, representation and decision-making 8 Gender-based violence 9 Gender-based violence – key statistics 10 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 11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14 Supporting women and children experiencing violence 16 Targeted support to improve women's safety 26 Unpaid and paid care 29 Unpaid and paid care – key statistics 30 Unpaid care 30 Sharing care 34 Valuing the paid care sector and other feminised industries 38 Economic equality and security 43 Women's economic equality – key statistics 44 Providing cost-of-living relief to women and families 44 Building a gender-balanced workforce for a future made in Australia 49 Narrowing the gender pay gap 52 Women's workforce participation 53 Enhancing lifetime economic security and gender equality 59 Health 63 Women's health – key statistics 64 Gender equity and health 64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66 Maternal health 70 Mental health 74
--	--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24), Budget2024-25: Women's budget statement

2.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OECD는 국가 예·결산 프로세스와 환경 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간 연계를 확산하여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녹색예산을 위한 파리 협약’을 2017년 출범한 바 있다.

2023년 발간된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2023’은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제도 조사(The 2022 OECD Survey on Green Budgeting)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OECD 38개국에 설문지 배포, 36개국으로부터 응답 접수, ’22년 조사 대상 36개국 중 24개국(66%)이 녹색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조사 대상 35개국 중 14개국(40%)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녹색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변경 사항 적용의 유연성이 높은 행정절차 기반 녹색예산 실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예산법을 근거로 녹색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11개 국가였다. OECD에 따르면 이 중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의 경우 재무 부서에서 별도의 녹색예산서를 작성한다.⁹⁾

〈표 II-5〉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

국가	행정절차	기타 법안	예산법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합계	21(88%)	14(58%)	11(46%)

* OECD(2024),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9)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도 재무 부서(MEF Ragioneria Generale dello Stato)에서 2023 회계연도까지 별도의 녹색예산서(Ecobilancio dello stato)를 작성하였다. 다만 2024년도 이후의 녹색예산서는 온라인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국가는 녹색예산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녹색예산 시행에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예산 책정에 기후 및 환경 관점을 통합하거나 예산계획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 유해 조세지출 검토, 녹색 위험 분석 등 다양한 유형이 시행되고 있다.

〈표 II-6〉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 방법 및 도구

	환경 영향 평가	녹색 예산 태깅	유해 조세지출 검토	환경 비용편익 분석	예산책정시 탄소평가	탄소 잠재 가격	녹색 다년간 예산	녹색 관점의 지출검토	일관된 측정 항목	탄소 예산	녹색 거시재정 전망	녹색 위험 분석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칠레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스위스
합계	18(75%)	13(54%)	12(50%)	11(46%)	11(46%)	10(42%)	8(33%)	6(25%)	6(25%)	5(21%)	4(17%)	3(13%)

자료: OECD(2024),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Table 3.

또한 '22년 기준 녹색예산 시행 24개국 중 16개국이 기후·환경 목표의 달성 여부 및 녹색예산 이행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양식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공공부문 재무제표 공시와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가. 국가별 사례

1) 프랑스¹⁰⁾

녹색예산 분야에 있어 프랑스는 뒤이어 다룰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2017년 1월 프랑스는 처음으로 국가 단위에서 녹색 채권(Green OAT)¹¹⁾ 발행에 성공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평가 위원회는 녹색 채권과 관련된 지출의 환경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²⁾

2017년 12월에는 프랑스가 파리 기후 협정(Paris Agreement)¹³⁾ 및 기타 환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OECD가 시작한 「녹색 예산 협정(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2018년 일어난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 이후,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환경세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한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 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재정법¹⁴⁾은, 예산이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정부가 의회에 제공하도록 개정하였다.

10) OECD의 Green Budgeting in France 자료; IMF PFM Blog의 “Moving Towards Green Budgeting in France”(October 28, 2019), 프랑스 CGEDD, IGF 협동, “Green budgeting: proposition de méthode pour une budgétisation environnementale(2019.9.)” 등 참고, 정성호·장윤정(2020), 인지예·결산제도 국제비교-OECD 국가를 중심으로-(기획재정부 수탁과제, 비공개) 발췌·요약

11)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sovrenign bond)의 일종으로, 채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환경개선사업에만 투자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며 매년 성과 및 사후 영향 등을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Green Budgeting in France”, by Adrien Zakhartchouk, Fr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9.11. 참고

13) 「파리 기후변화와 지속발전 목표 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출처: 외교부, 파리협정의 의 및 특징).

14)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법제주의를 채택하여 매년도 예산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환경에 관련된 세 가지의 예산안 부속서류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두 가지의 황색예산¹⁵⁾과 기후에 관한 전환기 정책 보고서(DPT)가 그것이다. 첫 번째 황색예산인 ‘자연과 환경 보호 비용 명세서(Protection of nature and the environment, PNE)’는 1990재정법(예산법) 제131조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모든 보조금의 목록을 작성하고, 지방정부의 익년도 지출도 살펴본다.

두 번째 황색예산서는 ‘에너지 전환 비용 명세서’로서, 2015년 제정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제174조에 따라 에너지 전환에 투입되는 민간과 공공의 비용을 계량화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아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재정기본법(LOLF) 51조에 따라 2005년부터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작성되는 ‘전환기 정책 보고서(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ire, DPT)’는 21개의 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예산서에 더하여 환경세에 대한 조세지출 보고서 및 EU 기준에 맞춘 탄소세 통계 등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녹색예산서는 이들 다섯 가지를 통합하여 작성된다.

2018년 12월 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 재정법 제2018-2317호¹⁶⁾ 206조에서는, 정부가 의회에 예산이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예산서의 첨부서류로 제공하여야 하도록 정하였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프랑스 재정기본법(LOLF) 제 51조 7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그 존재가 도출되며 특별한 공공정책을 위해 정부에 국회로 달성된 재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부속서류를 황색예산(Jaune budgétaire annexé, Yellow budget)이라고 한다.

16)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법제주의를 채택하여 매년도 예산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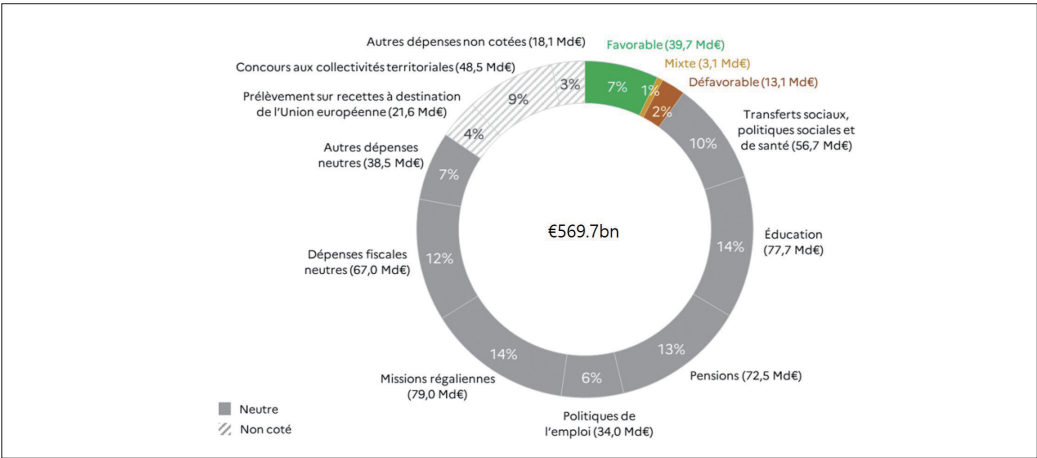
〈표 II-7〉 프랑스 2019년 재정법, 법률 제2018-1317호

- 당해연도 및 예산법안에 포함된 연도를 대상으로 에너지, 기후변화 저지, 환경을 위한 모든 공공 재정행위(public financing)의 명세서(statement)
- 에너지 전환과 생태 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공 및 민간 재정 자원(public and private financial resources)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EU 목표 및 파리 협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
- 환경-에너지 세제 차원의 전략을 구체화하는 명세서로서 이 세금의 의무적인 부담분이 얼마인지, 여기에 관계된 경제적 행위자들은 누구인지, 수입은 얼마인지, 환경 친화적인 조세지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명세서는 환경 및 에너지세의 영향을 가구의 소득수준별, 지역별 구성에 따라 그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생산비용과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별 예·결산차를 포함한 성과 보고서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인지결산서에 해당하는 녹색결산서, 즉 정책 영역별 결산안 부속서류에 대한 규정은 없다. 프랑스의 결산서(PLRG) 부속서류는 화폐계정(Comptes d'operations monetaires), 산업계정(Comptes de commerces) 명세서로만 구성된다.

2024년도 녹색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계획을 포함한 프랑스의 2024년 예산안 5,697억 유로 중 한 가지 이상의 환경목표에 친화적인 예산은 397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80억 유로 증가한 것이다.

〈그림 II-3〉 프랑스의 국가 연간 예산 중 친환경 예산 식별 결과



자료: Government of France(2023), Report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p.37.

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90년부터 환경예산서를, 2009년부터 환경결산서를 작성 및 발표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환경결산을 마지막으로 2024년 및 2025년도 예산서의 발표 내용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별도의 환경예산서 작성 국가에서 이탈리아가 제외된 2022년 기준 OECD 조사 결과에도 부합한다.

이탈리아 정부의 각 부처는 예산회계처의 지침(Determination of State Account General)에 정해진 회계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환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재무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부처의 책임 센터(Responsibility center)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EU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대로 재분류 및 처리된다. 이 자료는 국가회계책임청(State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행정 책임 센터(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Center)로 집중되어 국가일반보고서(rendiconto stato general, general state report)의 연간 준비 일정에 따라 부속서류로서 작성된다.

여기에 쓰이는 환경적 지출의 정의와 기준 분류체계는 유럽통계국(Eurostat)이 회원국의 국가회계 기준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의한 ‘환경에 대한 경제 정보 수집을 위한 유럽 체계(European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economic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SERIEE)’이다. 이 체계는 환경 관련 지출을 크게 환경 보호 관련 지출 분류(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nd expenditure, 약칭 CEPA)와 자연 자원의 이용과 관리 지출 분류(Classification of Resource use and Management Activities and Expenditure, 약칭 CRUMA) 두 가지로 나눈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다시 환경 정책의 대상에 따라 CEPA가 9개, CRUMA가 7개로 나뉜다.

환경지출 결산서는 환경적 목적을 가진 정책의 예산 집행 결과를 ① 정책목적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적 분류에 따라 집계하여 나타내고 있다. 2022년 환경결산서는 2023년 6월 의회에 국가일반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제출되었다. 환경보호와 자원 활용에 배정된 일차 지출은 339억 유로로 국가 예산의 3.4%에 해당

한다. 실제 지출된 것은 252억 유로로 배정 금액의 74.4%에 해당한다.

CEPA 9개, CRUMA 7개에 기타 1종을 합친 17개 정책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기타 환경 보호’(53.8%), ‘대기와 기후 보호’(8.9%), ‘기타’(8.9%)가 가장 비중 높은 세 개 항목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토양과 표층수의 보호와 복원’(6.6%) 및 ‘환경보호를 위한 R&D’(5.8%),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원료관리’(4.1%)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외 ‘생물다양성 보호와 경관’(3.4%), ‘자원관리 R&D’(3.1%), ‘내륙 수면 이용과 관리’(3.0%), ‘오수 관리’(1.8%), ‘폐기물 관리’(1.4%) 등이다.

이들의 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환경전환부가 72.1%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 재정경제부 9.6%,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이동성부가 7.0%로 세 부처의 합계가 전체의 약 89%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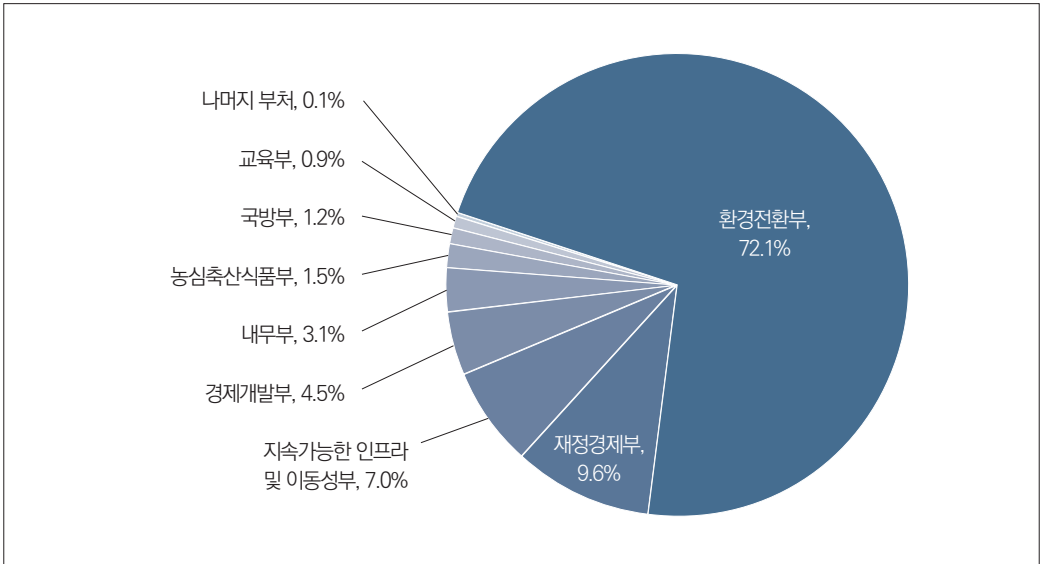
〈표 II-8〉 이탈리아 중앙정부 기준 2022년 환경 관련 지출 가능 잔액

(단위: 천만 유로, %)

	당기비용	자본 계정 비용	합계	비중
1. 대기와 기후 보호	20.3	280.9	301.2	8.9
2. 오수 관리	10.2	51.9	62.1	1.8
3. 폐기물 관리	9.5	37.8	47.2	1.4
4. 토양과 표층수	28.0	196.1	224.1	6.6
5. 소음과 진동	0.3	0.1	0.4	0.0
6. 생물다양성과 경관	51.8	64.2	116.0	3.4
7. 방사능 보호	0.8	0.0	0.8	0
8. 환경보호 R&D	90.3	106.1	196.4	5.8
9. 기타 보호활동	1,146.9	677.1	1,824.0	53.8
10. 내륙수면 관리	1.9	100.2	102.2	3.0
11. 산림자원 관리	6.7	6.7	13.4	0.4
12. 광물자원 관리	11.9	1.2	13.1	0.4
13. 재생불가 에너지 광물자원 관리	3.2	136.4	139.5	4.1
14. 비에너지 광물 관리	0.3	-	0.3	0.0
15. 자원관리 R&D	4.2	100.9	105.1	3.1
16. 기타	3.4	238.4	241.8	7.1
합계	1,389.8	1,998.1	3,387.9	100.0

자료: Ministero dell'Economia e del Finanze(2023), ecorendiconto dello stato 2022.

〈그림 II-4〉 환경 관련 지출의 부처별 분포



자료: Ministero dell'Economia e del Finanze(2023), ecorendiconto dello stato 2022.

3. 분배 인지 예·결산제도

OECD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 ‘예산을 통한 불평등 개선: 최근의 국가 사례(A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 Lessons from Recent Country Experiences)’에서는 예산제도가 분배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OECD 고위 예산 관료 협의회(OECD Committee of Senior Budget Officials)가 협의를 거쳐 선정한 8개국-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상 국가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접근 방식, 즉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 사용 분배영향분석과 결과 기반 예산 프레임워크가 예산 과정에서 분배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예산제도 활용에 있어 핵심인 분배영향분석(DIA)의 초점

은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취한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경제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연구 국가에서는 예산 과정 내의 주요 조직이 분배영향분석을 수행하거나 조직하는 책임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는 의회가 의회예산처나 의회 특별 조사 기관에 분배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팀을 두고 있다. 이 팀들은 예산 내 정책에 대한 의회의 논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분배 문제뿐 아니라 요청된 모든 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표 II-9〉 지출 및 예산 결정 시 분배 영향평가 및 관련 분석 시행 형태

	부처별 사전 분배 관련 분석	재무부에서 사전 분배 관련 분석	예산 제출시 분배 및 관련 분석 발표	의회의 분배영향분석 참여	사후 정부 차원에서 분배 관련 분석	사후학계, 연구기관에서 분 배 영향 관련 분석
해당 국가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국가수	5	6	6	7	5	8

자료: OECD/KIPF(2024), Ad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 Lessons from Recent Country Experience, OECD Publishing, Paris.

가. 국가별 사례¹⁷⁾

1)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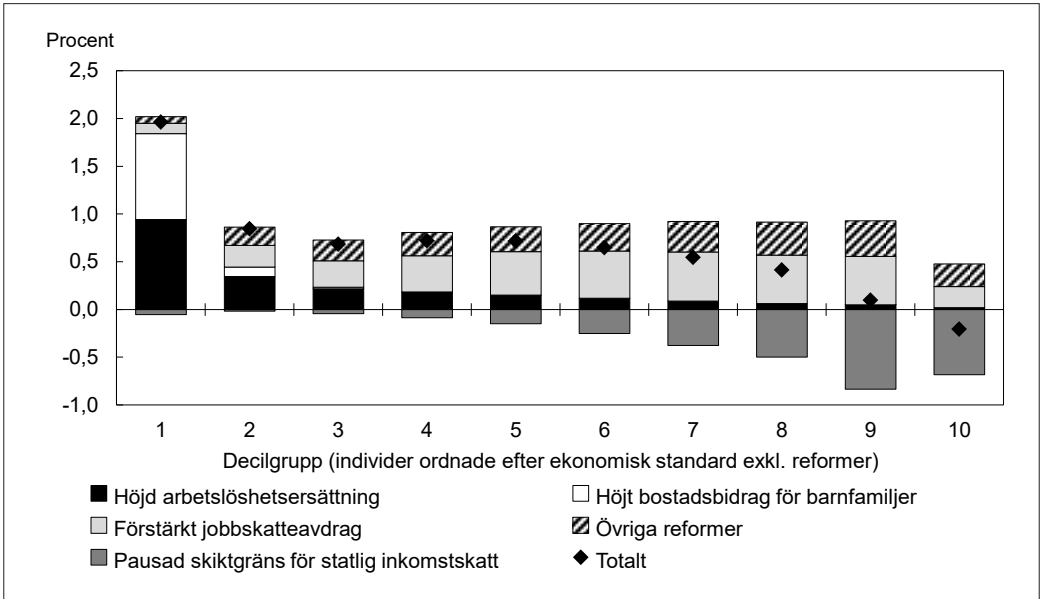
스웨덴은 예산의 성별 평등을 검토한 연례보고서를 1988년부터 출간하였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1998년부터 발간한 바 있다. 경제정책과 분배부 (Division for Economic Policy and Distribution, DEPD) 내에 제안된 정책의 소득불평등, 경제 성 평등을 분석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 이들의 업무 보조하에 분석이 이뤄진다.

분배분석을 담당하는 팀은 재무부 내부에서 예산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보조한다:

1. (1~3월) 예산안 구상 단계에서 여러 부처의 제안 사업이 재무부에서 검토될 때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여러 시나리오의 잠재적 영향을 구체화하는 것을 돕는다.
2. (4월) 부처별 중기 예산 초안, 즉 봄 예산안에 1994년부터 분배계정이라는 이름의 부속서(annex)를 준비
3. (5~6월) 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여기서 질적, 양적 분석을 세제와 지출 양측에 대해 시행하여 각종 예산 협상 시에 근거
4. (9월) 차년도 예산안 공개. 여기에는 1988년부터 부속서류가 된 ‘경제 성별 불평등’ 보고서가 첨부되며, DEPD는 이 문건 작성에 기여한다.

17) 위 OECD/KIPF(2024) 보고서상의 국가별 사례 중 일부 국가의 내용을 예산 관련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발췌, 요약한 것임

〈그림 II-5〉 정부 임기 중 개혁에 따른 10분위별 평균 효과



자료: Swedish Government(2024), 2024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봄 재정 법안), Diagram 5-5.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재무부와 중앙계획청(Centraal Planbureau, CPB)이 공동으로 예산안의 분배영향분석을 맡고 있다. 정책 제안의 분배영향을 다루는 데 관여하는 두 가지 주요 부처는 주로 예산 조정 및 준비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사회고용부이며, 관계 각 부처 장관은 의회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는 CPB가 개발, 운영하는 공유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인 Microsimulatie model voor belastingen, social zekerheid, loonkosten en koopkracht(약칭 MIMOSI)에서 나오며, 그 결과는 예산 제출에 직접 반영된다.

예산 과정에서 지출 제안과 정책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산은 재무부 내부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새로운 예산안이 제출될 때 공개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

고 약속함에 따라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내부 문서는 최종 제안된 계획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두 부처와 CPB 간 직원 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정부 수준에서 전문 지식은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MIMOSI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의 수는 일반적으로 15명을 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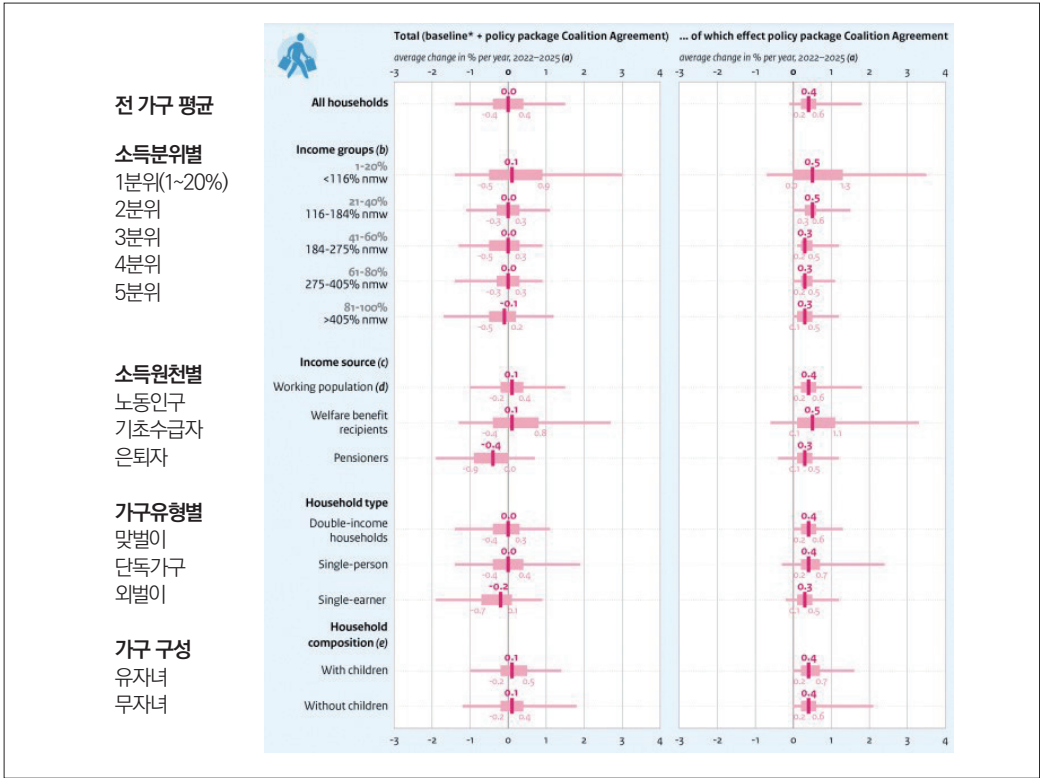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예산 절차는 봄에 시작되며, 2022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는 예산의 소득 측면에 대한 결정이 8월에 마무리되었다. 8월은 예산 요구 사업의 분배적 영향이 고려되는 때로 CPB는 상반기 수치를 사용한 경제 전망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분배영향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이 시기는 재무부와 사회고용부가 이미 예산상 고려해야 할 항목 목록의 준비를 마친 시점이기도 하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CPB가 시나리오별로 소득분배 효과 분석을 사전에 해둠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서로 다른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부는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정책 옵션을 준비할 수 있고, 재무부는 예산 건전성 및 예산 차질 보상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경제 전망이 제시되면, 그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여 전체 인구와 여러 하위 섹션에 대한 실질 가처분소득 개선의 중간값을 계산해 낸다.

이는 정치인들이 예산사업에 따른 국민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가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룹 간 추가 재분배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특정 사회 하위 집단을 돕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보통 8월 말경) 재무부는 내년 예산에 대한 제안을 CPB에 보낸다. CPB는 다양한 그룹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예산안의 경제적 영향을 계산한다. 부처와 CPB 모두 계산에 MIMOSI를 사용하지만, CPB는 정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거시경제 예측도 수행한다. CPB는 정부 예산안(CPB에 요청하는 경우)과 야당의 대체 예산안 모두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한다. CPB의 독립적인 지위로 인해 CPB는 출판 전에 부처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며, 대체 예산 제안 내용을 부처와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9월에는 새로운 예산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전통적으로 여기에는 소득 5분위수, 소득원(예: 혜택을 받는 근로자, 연금 수령자), 가구 유형별(예: 독신, 부부)로 분류하여 다양한 그룹의 구매력에 대한 새로운 계획의 영향을 조사하는 상당한 정보가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및 가족 특성(예: 자녀 유무)에 따른 예산 수혜 사전 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예산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후 의회에서는 수백 건의 세부적인 질문을 받는다. 가장 최근 예산에 대한 국회의 질문에는 “간호사의 상황은 얼마나 개선될 것이며, 다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가”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일반적으로 모델을 추가로 실행해야 하므로, 추가 분석 이후에 관련 장관을 초청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그림 II-6〉 네덜란드 최근 연합정부 합의 예산에 따른 분배영향분석 결과



자료: CPB(2023),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budgetary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3)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18년부터 정부 전반에 걸쳐 “평등 예산” 이니셔티브를 점진 도입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는 평등 관련 목표와 관련 성과 목표를 설정할 책임이 지워진다. 자문 그룹은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주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적 역량은 부서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분배 분석은 독립적으로 개발, 유지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세금 혜택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아일랜드의 사례는 예산 주기에서 평등을 일상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공공서비스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정부 부처에서 모두 평등 예산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는 여러 상위 수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DPER, 2022[13]). 모든 정부 부처는 목표로서의 평등을 정책을 통해 이행하고 예산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고려를 통합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은 예산 과정의 여러 지점에서 제안된 정책과 진행 중인 정책의 분배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예산에 앞서 재무부, 공공 지출부, NDP 전달 및 개혁, 사회 보호부는 각각 제안된 예산 조치 및 복지 패키지에 대한 분포 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은 잠재적인 정책 옵션과 미래의 복지 조치를 검토하는 예산 연도 초에 사전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이 작업은 각 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정부 부서의 SWITCH(복지 및 소득 세 변경 시뮬레이션) 세금 혜택 미세 시뮬레이션 모델 사용에 의존한다. 여러 부처는 모델 개발 및 관련 연구를 위해 경제사회연구소(ESRI)에 자금을 공동으로 제공한다.

아일랜드 정부의 지출 부서(DPENDR)는 정책 관할권 전반에 걸쳐 관련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평등 예산을 구현하는 일을 담당한다(Nicol, 2021). DPENDR과 재무부가 수행한 분배 분석은 예산일의 예산 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아일랜드는 네덜란드와 함께 예산 과정의 일부로 분배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단 2개국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의 SIA(사회적 영향평가)는 공공서비스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프로필과

예산 정책 결정에 따라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분석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기존 SWITCH 모델에 쉽게 통합될 수 없는 정책 영역, 주로 공공 지출이 수혜 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개발되었다. SIA는 연령, 성별, 지역 등 특정 그룹 특성에 대한 예산 결정이 분배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사회영향평가(SIA) 체계에서는 가구를 소득, 경제 상황, 가구 규모, 연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 결과 정보는 예산일에 제공된다.

평등 예산 도입 이후 지금까지 SIA는 국가 최저 임금 제도, 목표 보육 제도, 에너지 빈곤 및 일반 의료 서비스 제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2023년 7월 기준 가정 돌봄 수당, 사회 주택 지원, 대상 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3개의 SIA 보고서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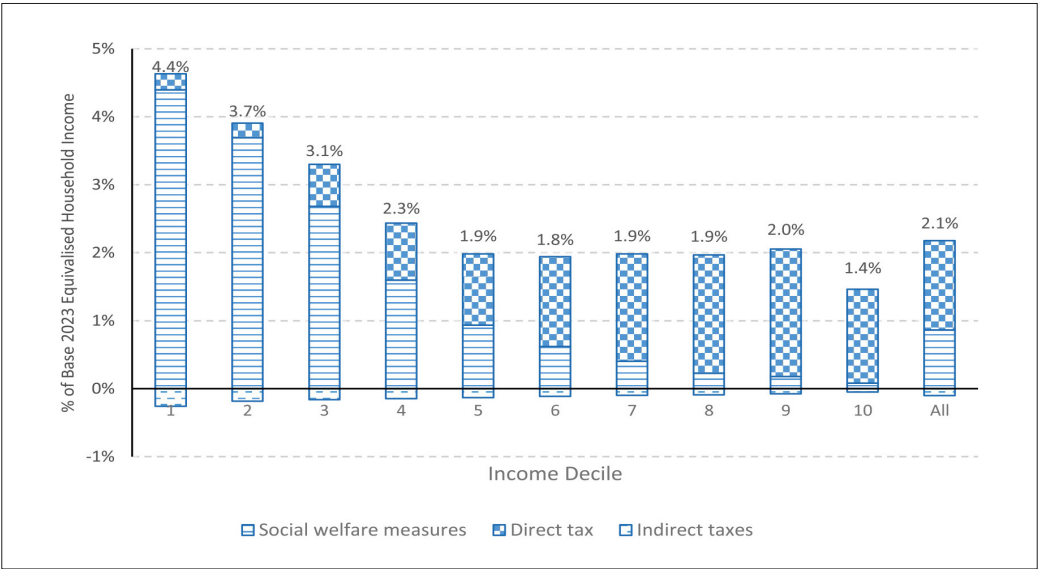
또한 아일랜드는 정부의 빈곤 퇴치 전략에 대한 공약에 따라 1998년에 ‘빈곤 방지 예산(Anti poverty program)’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관련 부서는 해당 정책 영역에서 빈곤영향평가(PIA)를 수행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평가는 중요한 정책 제안이 고려되는 모든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PIA는 예산 할당 결정(DSP)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 단계의 일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정책 계획이 내각의 기밀로 유지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빈곤영향평가 결과는 공개된다.

예산이 발표된 지 3일 후 경제사회연구소는 정책 개혁을 반사실적 지표 시나리오와 비교한 DIA 결과를 발표한다. 이 분석에서는 ESRI의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이 사용된다. 예산의 영향은 소득 10분위, 가족 유형, 근로 상태 및 성별을 기준으로 가구에 대해 추정되며, 약 한 달 후에 해당 분석이 공개된다.

또 하나의 사후 평가는 지출 검토 프로세스인데, 이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의제를 지원하는 정책 분석 및 평가 개발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정책 영역을 지속적으로 비판,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출 검토는 정책 및/또는 지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적으로 정부 내 각 부서에서 수행된다. 2022년에 공공 지출부, NDP 제공 및 개혁부, 고등교육, 연구, 혁신 및 과학부는 고등교육 부문의 인구통계와 공공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출 검토를 수행했다.

2024년 예산안의 핵심 패키지는 평균 가구소득을 2.1%가량 증가시키며, 소득 분배에 누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3분위에 대한 혜택은 주요 사회보장패키지에서 발생하고, 상위 1분위는 세제혜택을 통해 혜택이 발생한다.

〈그림 II-7〉 아일랜드 2024 일반회계 예산의 소득 10분위별 혜택 분석 결과



자료: Government of Ireland(2023), Budget 2024, Expenditure report. Figure 8.

〈그림 II-8〉 아일랜드 예산 ‘삶의 질 평가’ 보고서의 목차

3	Distributional analysis of Budget 2024	9
3.1	Introduction	9
3.2	Methodology and policies analysed	9
3.3	Estimated distributional impact	11
3.4	Summary	14
	2024년 예산의 분배영향	
4	Progressivity of the Irish income tax system	15
4.1	Introduction	15
4.2	Income growth and distribution in Ireland	15
4.3	Impact of the tax and welfare system	16
4.4	Income tax progressivity through the prism of the 'tax wedge'	20
4.5	Summary	21
	아일랜드 소득세의 누진도	

5	Equality budgeting analysis	22
5.1	Introduction	22
5.2	Recent developments	22
5.3	Labour force survey – participation rates	23
5.4	PAYE taxpayer data	25
5.5	Analysis of certain tax credits	26
5.6	Summary	27
	평등 예산 분석	
6	Green budgeting analysis	28
6.1	Introduction	28
6.2	Green budgeting analysis – existing tax measures and <i>Budget 2024</i>	28
6.3	Green budgeting analysis of <i>Budget 2024</i> – tax perspective	30
6.4	Green budgeting and the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	31
6.5	Summary	32
	친환경 예산 분석	
7	Conclusion	33

자료: Government of Ireland(2023), Budget 2024: Beyond GDP – Quality of Life Assessment.

4.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2006년 UN은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협약에 가입하여, 2009년 발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UN장애인권리협약 기반 장애포괄예산(CRPD-compliant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CCDIB)을 소개하고 있다. 장애포괄예산은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의 관심, 요구, 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재정 전략을 말한다. 장애포괄예산은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노동력 활용과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이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고립과 차별의 위험성을 줄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장애포괄예산은 국내외 법적으로 명시된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인권과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유엔개발계획은 장애포괄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인지 또는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결산제도와 같이 장애와 관련된 예·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장애 관련 예산의 규모, 중장기적 장애 정책 전략의 수립 여부 등이 존재하는 형태로 장애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다.

가. 국가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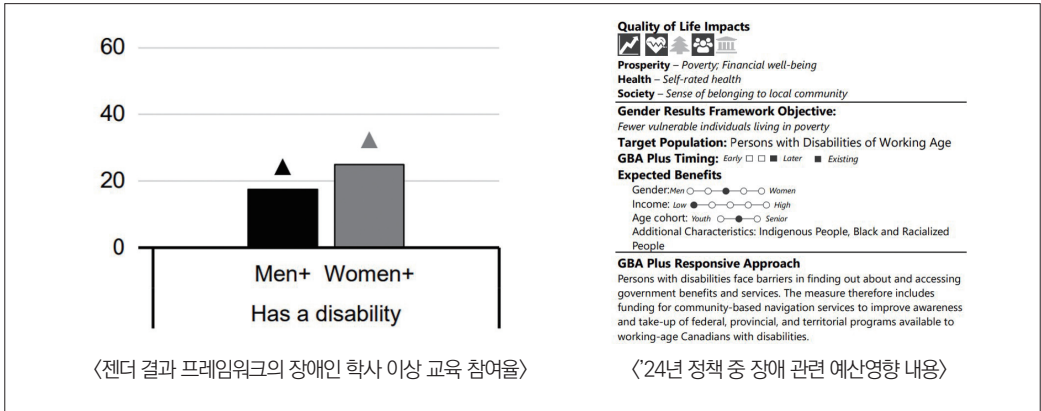
1) 캐나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성인지예산법¹⁸⁾이 통과되어 다양한 분야의 예산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향 보고서’¹⁹⁾를 작성하여 삶의 질, 장애, 소득분배, 세대 간 영향 효과 등 다양한 예산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확장적 성별 기반 분석(Gender-based Analysis Plus, GBA+)을 기반으로 성평등 목표 달성과 함께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요 지표 중 성별 외에도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기술 개발, 경제적 참여, 민주적 참여, 정의, 건강, 성평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요인을 교차 분석하고 있다.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수혜 대상(Target Population), 추가 특정 대상(Additional Characteristics)에서 해당 예산이 장애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19)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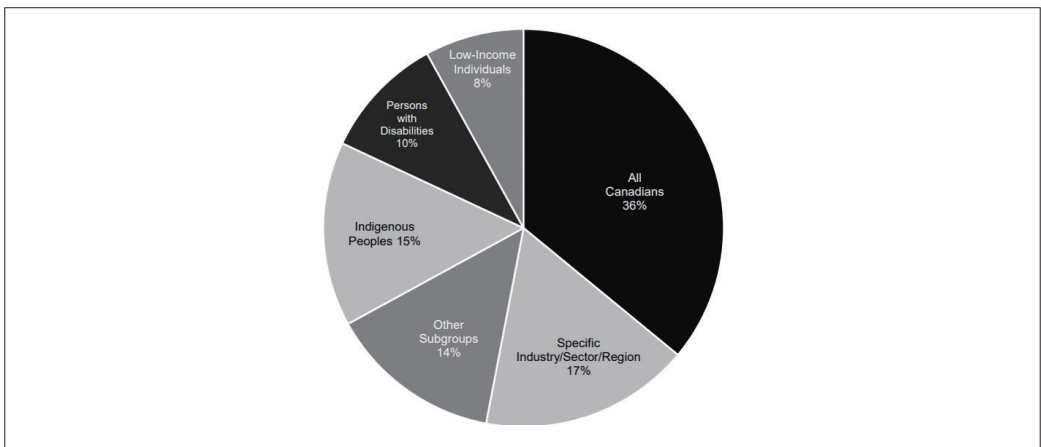
〈그림 II-9〉 캐나다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장애 요소 반영 사례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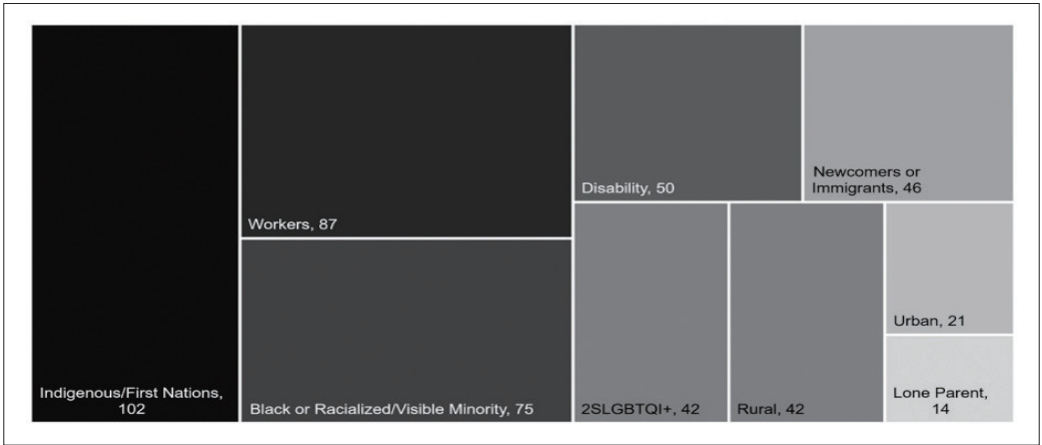
캐나다의 예산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대상 예산 투자 규모와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고려한 예산 정책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24년 기준 캐나다의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0%에 달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은 전체 479건 중 50건(10.4%)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그림 II-11〉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직간접적 장애 요소 반영 정책 수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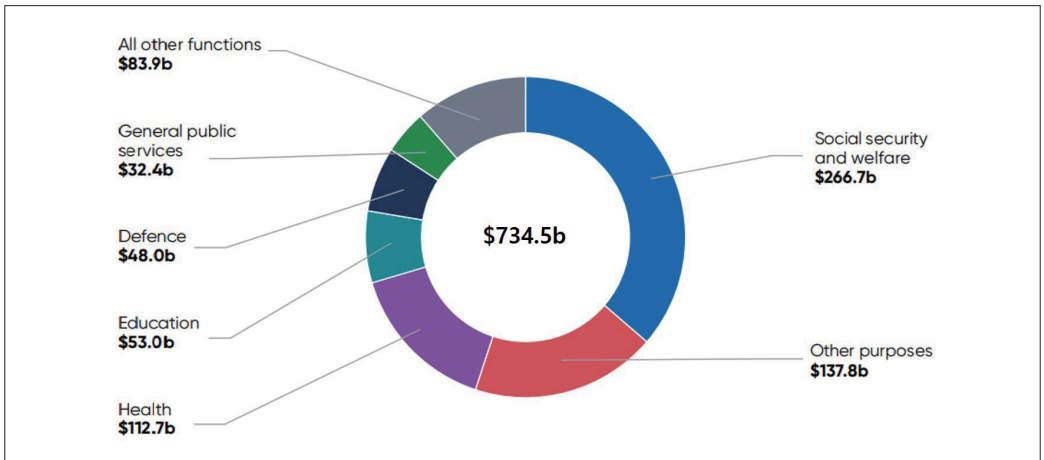
2) 호주

영국의 '24/25회계연도 호주 중앙정부의 지출은 총 7,345억 달러이며,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2,667억 달러로 총지출의 약 36.1%에 달한다. 호주의 국가장애 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총 9억 1,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²⁰⁾ 국가장애보험제도를 통해 호주는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개선 예산을 반영했다. 2025년까지 전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억 2,760만 달러의 예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²¹⁾ 호주의 장애 예산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정책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Budget 2023-24

21) Australia Government(2024.5.), Cost of living help & a future made in Australia – Budget 2024-25

〈그림 II-12〉 2024/25 호주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4.5.), Cost of living help & a future made in Australia – Budget 2024-25.

호주는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²²⁾을 수립하여, 전략목표 이행을 위한 장애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포괄적 장애 전략은 정부 및 지역 수준의 장애 관련 계획 등 광범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II-13〉 호주의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의 성과목표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1), Summary of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1.

22)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1

포괄적 장애 전략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장애인 보호부터 교통, 의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포괄적 장애 전략이 설정한 주요 성과목표는 고용 및 재정 안정, 포괄적인 주택과 커뮤니티, 안전·인권·정의, 개인·커뮤니티적 지원, 교육과 학습, 건강과 웰빙, 지역사회의 태도 등 7가지이다. 해당 7개의 성과 영역은 호주가 보다 장애에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값과 진행 상태 등을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14〉 호주의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의 성과목표 대시보드

Outcome area	Measure	Baseline value	Latest value	Progress status	Last updated
 Employment and financial security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Number of valid 52-week full outcome claims for employment in the 12-month period for people with disability	16,041 valid claims in 2020-21	24,845 valid claims in 2023-24	 Improving 	24 Oct 2024 View data source for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Employment and financial security	NDIS participants job support Proportion of NDIS participants who get the support they need to do their job	66% in 2021-22 Q2	63% in 2023-24 Q4	 Regress 	24 Oct 2024 View data source for NDIS participants job support
 Employment and financial security	Unemployment gap Gap in propor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labour force who are unemployed, compared with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disability	4.7 percentage points in 2018	3.9 percentage points in 2022	 No change 	24 Oct 2024 View data source for Unemployment gap

자료: 포괄적 장애 전략 성과 대시보드(<https://www.aihw.gov.au/australias-disability-strategy/outcomes/all-measures>, 2024.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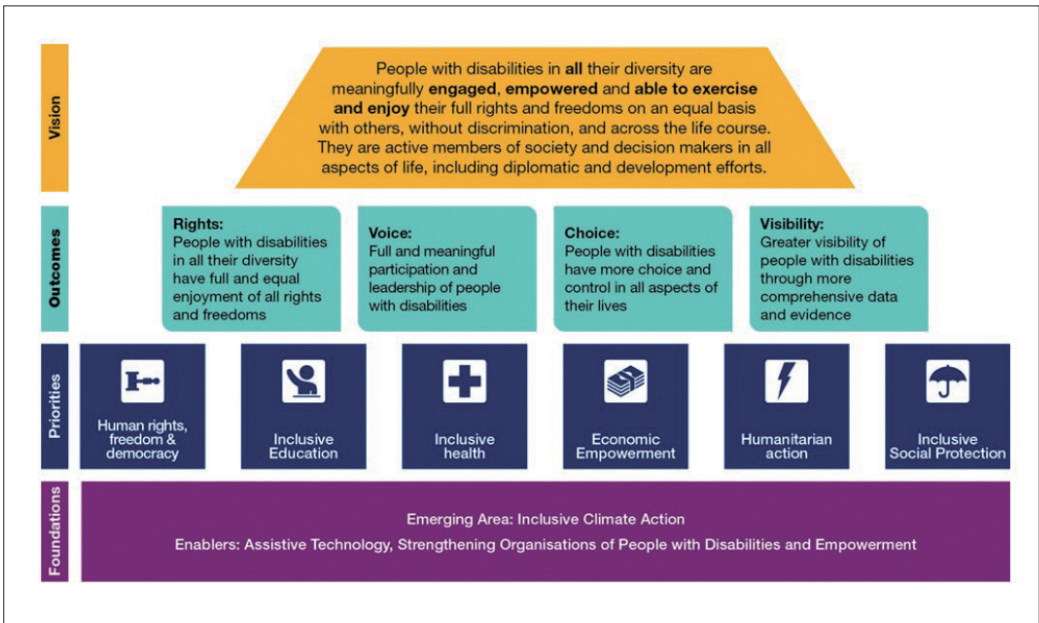
호주의 경우, 국가장애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포괄예산의 핵심 전략으로 ‘포괄적 장애 전략 2021-2031’을 수립하여 포용적 지역사회의 육성, 의료 및 교육의 접근성 향상, 접근 가능한 교통 보장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장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장애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장애 예산 책정과 장애인 권리보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호주의 장애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3) 영국

영국 외무부가 설정한 장애포용을 위한 종합전략(Disability Inclusion Strategy)은 영국 내 장애인들의 삶과 번영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장애인 비전 실현을 위한 4가지 주요 요소로 장애인의 기본 권리, 사회적 참여와 대표성,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권, 장애인의 경험이 반영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채택해 향후 장애인 정책 수립 등에 해당 요소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포용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2023-2024년 장애인 행동 계획(Disability Action Plan)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에는 장애인의 국가정책적 대표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공직 선출 지원, 정책 결정 시 장애인의 의견 반영,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 수행 및 데이터 구축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그림 II-15〉 영국의 장애포용을 위한 종합전략 프레임워크



자료: The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2022), FCDO's Disability Inclusion and Rights Strategy 2022-2030, 16p.

2023년 봄 예산에서는 장애인이나 장기 질병으로 소외된 노동력의 잠재력 증진과 활용을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 우선순위 적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수립했다. 원격 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선택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등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영국의 '23/24회계연도 기준 사회복지지출은 2,958억 파운드 규모로 예상되며, 전체 GDP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중 장애인 혜택과 관련된 지출은 361억 파운드로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1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28/29회계연도에 장애 혜택을 위한 지출이 약 522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표 II-10〉 영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단위: 억 파운드, %)

구분	결산	예측치					
	'22/23	'23/24	'24/25	'25/26	'26/27	'27/28	'28/29
장애인 혜택	300	361	403	433	462	493	522
총 사회복지지출	2,615	2,958	3,151	3,290	3,397	3,482	3,601
(GDP 대비 비중)	10.2	10.8	11.3	11.4	11.4	11.3	11.2

자료: UK OBR(2024.3.),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able 4.8., p 111.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 관련 지출은 장애인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이다. 장애인생활수당은 일상생활이나 이동 등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공급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24회계연도 기준 68억 파운드를 지출했다. 장애인생활수당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수당(Personal Independent Payment, PIP)에 216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

5.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이 소절에서는 예산의 세대 간 수혜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사례(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사업을 인식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총량을 집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인지 예·결산제도의 사례(경기도)를 소개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한 장기전망보고서 사례(호주, 미국)도 별도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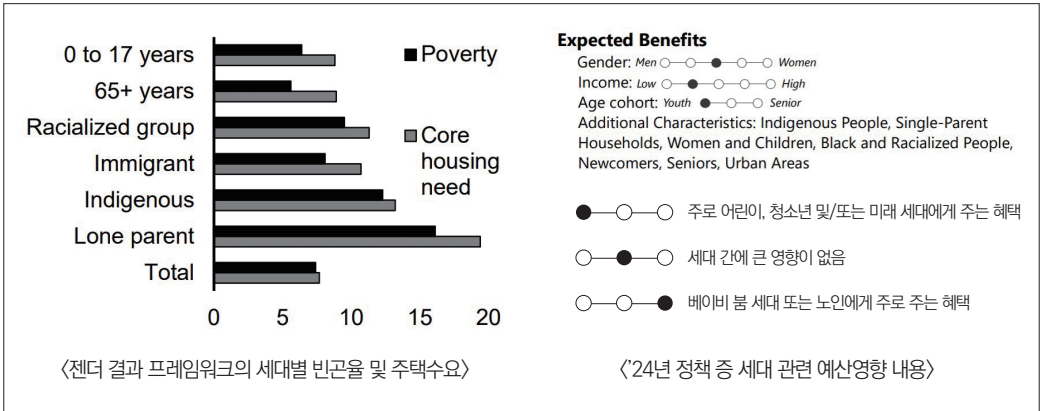
가. 국가별 사례

1) 캐나다

캐나다는 앞서 4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성평등 목표 검토 시에 세대별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산 영향 보고서 내에 세대별 혜택 정도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나타내고 있다. 예산 영향 보고서 내 3개 구간의 세대 분포(청년-중년-노년) 그래프를 통해 정책의 혜택이 어떠한 세대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24년 예산의 최소 4분의 1은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과 주택 문제로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의 수혜가 증가할 것으로 본 영향 보고서는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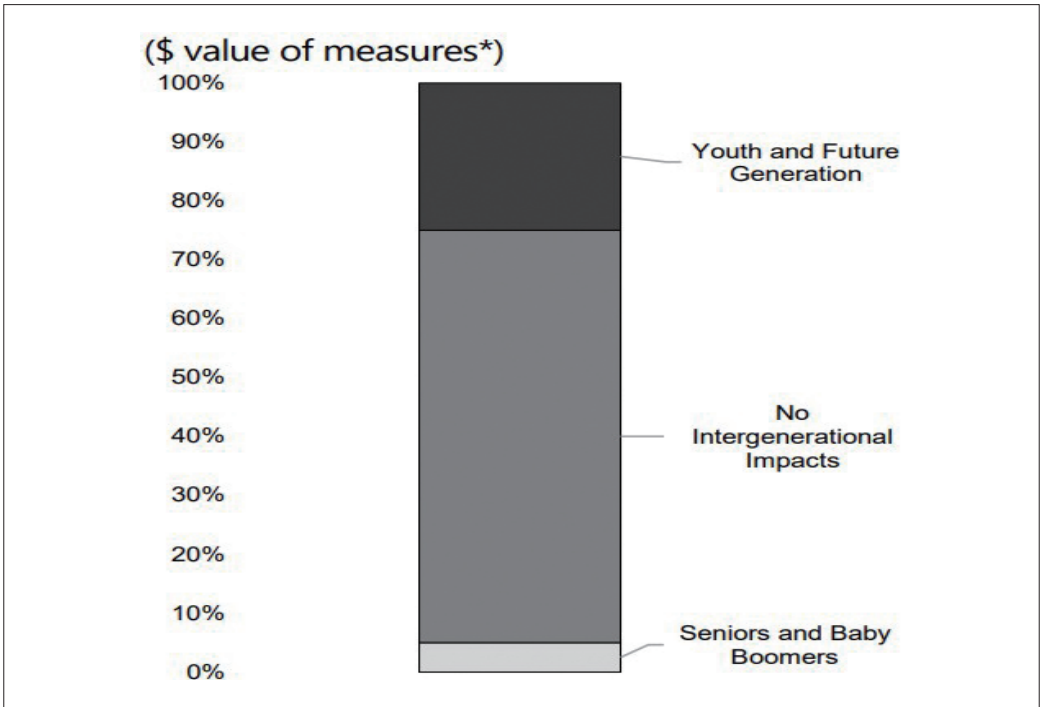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는 성평등 목표에 대한 세대별 지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분리하여 제시하였고, 성별에 대한 기본 분석과 함께 세대별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II-16〉 예산 영향 보고서 내 세대 간 요소 반영 사례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그림 II-17〉 '24년 예산 영향 보고서 세대 간 예산 혜택 비중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재무부는 '19년 예산안 발표 시부터 공공재정법²³⁾에 따라 재정 전략과 아동빈곤보고서, 기후전략대응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아동빈곤보고서는 '18년에 공공재정법과 아동빈곤감소법²⁴⁾이 개정되면서 예산서에 아동빈곤의 현황과 지원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한 데 따라 작성된다. 보고서의 내용은 가장 최근 완료된 회계연도에서의 아동빈곤 감소의 결과를 확인하고, 아동빈곤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세대 간 수혜 형평성을 살펴보는 인구인지예산제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아동빈곤감소법은 아동빈곤의 측정 방법으로서 주거비 지출 후 빈곤율(AHC50)²⁵⁾, 주거비 지출 전 빈곤율(BHC50)²⁶⁾, 물질적 빈곤율 등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3가지 아동빈곤 측정 지표와 함께 아동빈곤 정도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추가보완 지표 6개를 포함한 아동빈곤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분위를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 아동빈곤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른 빈곤율 검토와 더불어 마오리, 태평양 지역, 장애 여부 등 특정 인구집단을 고려한 아동빈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표 II-11〉 뉴질랜드 아동빈곤보고서의 측정 지표

구분	주거비 지출후 빈곤율(AHC50)	주거비 지출전 빈곤율(BHC50)	물질적 빈곤율
지표 설명	• 주거비 지출 이후 빈곤가정의 아동	• 주거비 지출 이전 빈곤가정의 아동	•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
측정 방법	• '17/18회계연도 중위소득 50% 고정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지출 이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소득의 아동 비율	• 당해연도 중위소득 50%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지출 이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소득의 아동 비율	• 물질적 박탈 지수: 17개 물품 항목 중 6개 이상의 물품 부족을 겪는 상태

23) Public Finance Act 1989

24) The Child Poverty Reduction Ac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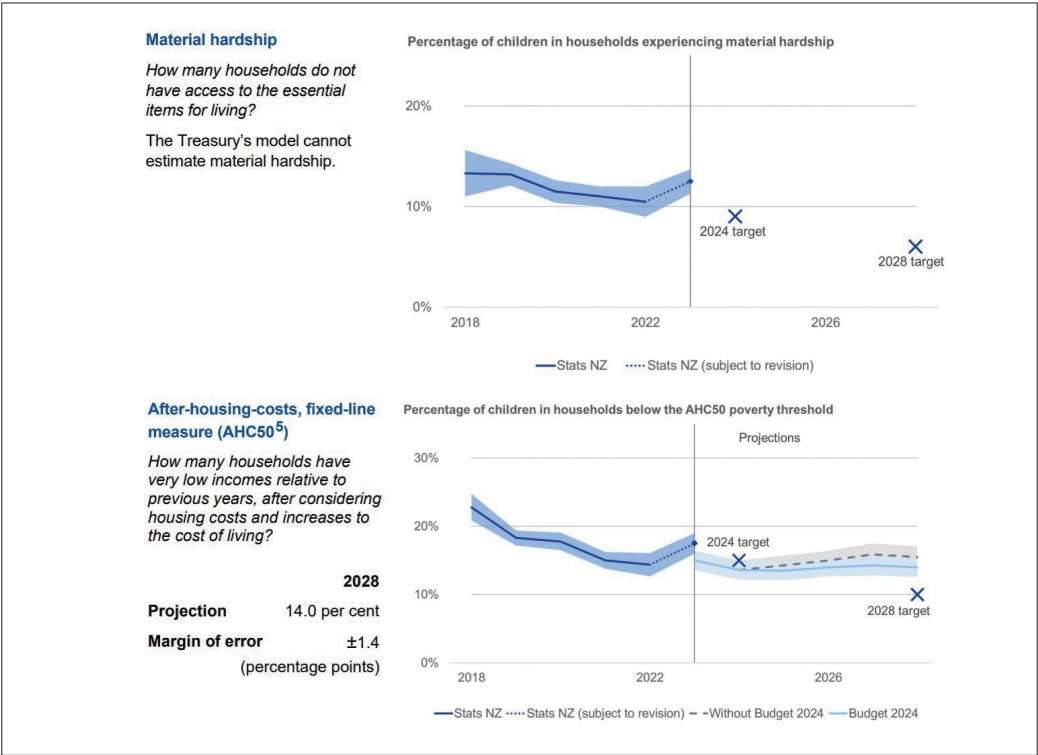
25) After-housing-costs, fixed-line measure(AHC50)

26) Before-housing-costs, moving-line measure(BHC50)

'23년 아동빈곤보고서에 따르면, '22년도에 주요 3개 아동빈곤 지표가 감소했으며, '23년 예산을 통해 빈곤가족의 가계비용(약 25억 달러)을 중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7/18회계연도부터 10년 장기 아동빈곤을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3년 차인 '21/22에 모든 지표에서 안정적으로 목표 달성 진행 중임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4년 사이 주거비 지출후 빈곤율(AHC50)은 22.8%에서 15.4%로, 주거비 지출전 빈곤율(BHC50)은 16.5%에서 12%로 감소하였으며 물질적 빈곤율도 13.3%에서 10.3%로 하락하고 있다.

세부적인 분포를 보면, 전체 아동의 빈곤율에 비해 마오리·태평양 지역, 장애아동의 빈곤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유아교육, 보육서비스, 어린이 대상 점심 제공, 무료 대중교통 제공, 마오리 지역 추가자금 제공 등 고정비에 해당하는 필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II-18〉 '24년 아동빈곤보고서 중 아동빈곤지표의 추세와 전망



BOX 1.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사례(호주,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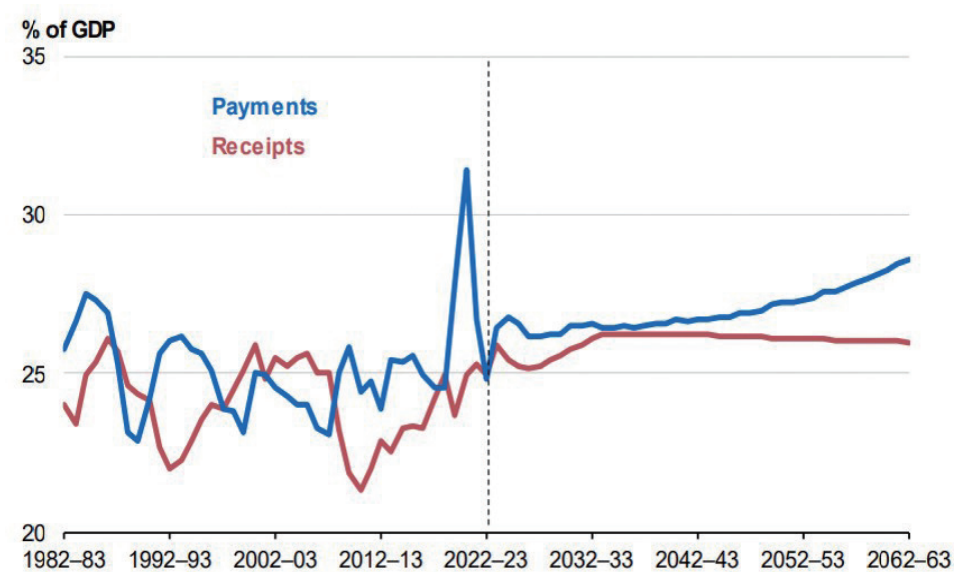
호주 예산 정직 헌장법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88)은 재무부 장관이 책임하에 5년 주기로 향후 40년을 시계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담아 세대 간 보고서를 작성, 발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2002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21년 그리고 최근 2023년에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가 발간되었다.

이번 세대 간 보고서는 우선 인구, 생산성, 기후 등을 포함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는 데서 시작한다. 뒤이어 재정 상태와 정부지출, 수입이 구성 요소별로 어떠한 추세를 이룰지 상세하게 전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망 결과 중 재정전망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성장 속도 저하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가 둔화되고 의료, 장애보험, 고령자 돌봄, 이자지출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감소하다가 2040년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62~2063년에는 3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로는 예산 개혁,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 인적 자원 육성,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돌봄의 질 향상, 기획의 확대, 국가안보 등을 꼽았다.

〈그림 II-19〉 호주의 재정수입(붉은색)과 지출(파란색)의 GDP 대비 비중 장기 전망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3),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 Chart 6.2., p.129.

〈그림 II-20〉 호주 2023 세대 간 보고서 목차 구성

재무장관의 서문

요약

1장. 향후 40년의 경제

1. 경제
2. 인구
3. 생산참여
4. 생산성
5. 기후와 에너지

2장. 향후 40년의 예산

6. 예산
 - 6.1. 수지 전망
 - 6.2. 부채 전망
 - 6.3.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7. 정부지출
 - 7.1. 보건
 - 7.2. 국가 장애 보험
 - 7.3. 고령자 요양
 - 7.4. 국가안보와 지역안정성
 - 7.5. 퇴직 소득 시스템
 - 7.6. 소득지원과 가족 보조급여
 - 7.7. 교육훈련
 - 7.8. 인프라
 - 7.9. 기타
8. 수입
 - 8.1. 소득세
 - 8.2. 소비세
 - 8.3. 간접세(주 소비세 포함)
 - 8.4. 법인세와 기타 소득과세
 - 8.5. 세외수입
9. 채무, 자산



Contents

Treasurer's foreword	v
Executive summary	vii
Part I: The economy over the next 40 years	1
1. Economy	3
2. Population	37
3. Participation	61
4. Productivity	79
5. Climate change and energy	93
Part II: The budget over the next 40 years	125
6. The budget	127
6.1 Budget balance projections	128
6.2 Debt projections	133
6.3 Supporting a sustainable budget	140
7. Government spending	143
7.1 Health	148
7.2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151
7.3 Aged care	159
7.4 National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161
7.5 Retirement income system	165
7.6 Income support and family assistance payments	174
7.7 Education and training	180
7.8 Infrastructure	185
7.9 Other payments	187
8. Revenue	191
8.1 Personal income tax	197
8.2 Goods and services tax	199
8.3 Indirect tax (excluding GST)	200
8.4 Company and other income taxes	204
8.5 Non-tax receipts	207
9. The balance sheet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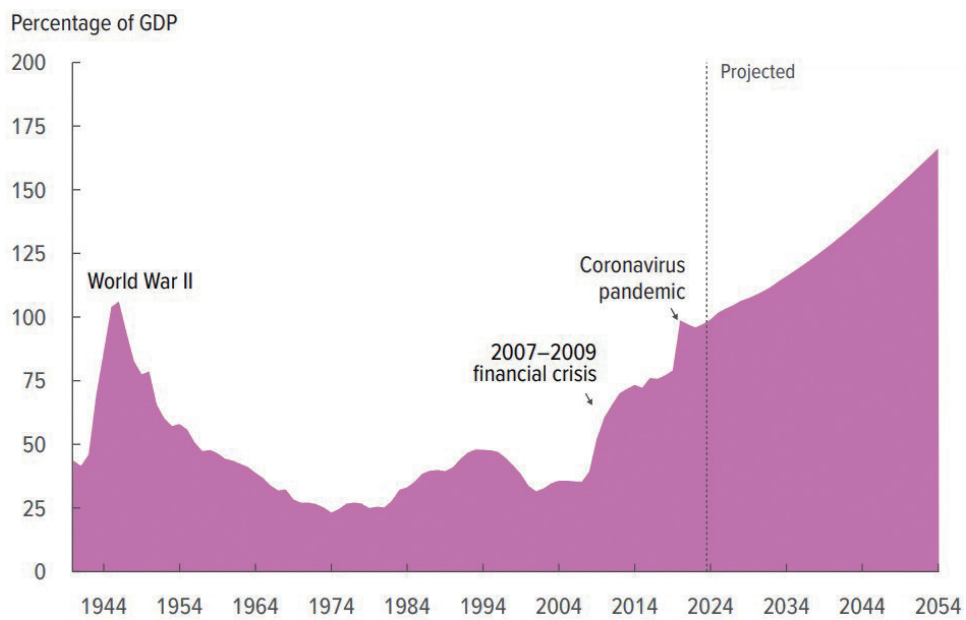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23),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향후 30년을 시계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1996년 5월 첫 발간된 장기전망보고서는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간된 2024~2054년 장기재정전망은 전망 기간 중의 인구 증가세가 지난 3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어 2040년부터 미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는 가운데,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메디케어 등의 주요 의료 지출이 GDP 대비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지와 채무도 지난 30년 또는 50년에 비해 악화되어 국가채무는 2054년 1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로는 예산 개혁,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 인적 자원 육성, 닛제로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돌봄의 질 향상, 기회의 확대, 국가안보 등을 꼽았다.

〈그림 II-21〉 미국의 장기 부채 전망



자료: CBO(2024),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p.2.

〈그림 II-22〉 미국 2024~2054 장기전망보고서 목차 구성

요약

1장. 수지와 채무

- 개관
- 수지와 채무 전망
- 국가채무 증가의 효과
- 장기전망상의 불확실성 요인

2장. 지출과 수입

- 개관
- 지출
- 수입

3장. 장기 인구, 경제전망

- 개관
- 지출
- 수입

부록 A. 정책설정과 모델링

부록 B. 지난 경제전망과의 비교

부록 C. 추가경제요인에 대한
CBO의 전망

부록 D. 지난 재정전망과의 비교



Executive Summary	1
Chapter 1: Deficits and Debt	9
Overview	9
Deficits and Debt Through 2054	9
Consequences of Large and Growing Federal Debt	10
Uncertainty of CBO's Long-Term Projections	14
Chapter 2: Spending and Revenues	17
Overview	17
Spending	17
Revenues	25
Chapter 3: Long-Term Demographic and Economic Projections	31
Overview	31
Demographic Projections	31
Economic Projections	32
Appendix A: Policy Specifications and Modeling	41
Appendix B: Changes in CBO's Long-Term Economic Projections Since June 2023	43
Appendix C: CBO's Projections of Additional Economic Factors	47
Appendix D: Changes in CBO's Long-Term Budget Projections Since June 2023	53
List of Tables and Figures	61
About This Document	62

자료: CBO(2024),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이와 같은 장기전망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과정에서 인구변화를 고려하는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인지 예산제도의 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 소개한 호주와 미국 외에도 G7 국가(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6. 기타 사례

이 소절에서는 평등인지예산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인지예산제도와 인종간 평등 예산제도를 다룬다.

지역인지예산제도는 프랑스에서 ‘정책현안보고서(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le, 약어 DPT)’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정책현안보고서는 프랑스 예산안에 첨부되는 부속서류의 일종으로, 주요 현안의 정책 방향 및 목표와 관련 예산·조세지출 사업을 소개한다. 2024년도 예산안 부속 정책현안보고서는 성평등, 국토정비, 국토방위, 이민과통합, 탈세방지 등 17종에 달한다.

국토정비인지예산 보고서(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le, Aménagement du territoire)는 이 17개 주제 보고서 중 하나로 근래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인지예산서에 가깝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령 부속도서 등 해외에 영토를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프랑스의 특성상 국토의 전반적 개발, 문화 통합을 중요 정책의제의 하나로 보아 작성된다. 작성 주체는 환경부와 국토정비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업 정책과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관련된 예산은 약 82억 유로가 할당되었으며 세부 예산프로그램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재해 예방, 고등교육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28) 이하의 내용은 2023년 9월 미주개발은행(IDB) 주최로 열린 “Racial Equity Budgeting: Lessons from United States and Brazil” ‘행사 소개를 위한 <https://blogs.iadb.org/gestion-fiscal/en/racial-equity-budgeting-reduce-inequalities/> 페이지의 내용을 번역, 요약하였다.

〈그림 II-23〉 프랑스 국토정비인지예산 보고서 표지 및 내용 중 관련 예산 일람표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Aménagement du territoire

Ministre chef de file :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2024

	Exécution 2022		LFI • LFR 2023		PLF 2024	
	Numéro et intitulé du programme ou du PSR ou de l'action	Autorisations d'engagement	Crédits de paiement	Autorisations d'engagement	Crédits de paiement	Autorisations d'engagement
P112	Impulsion et coordination de la politiqu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410 320 651	338 032 206	319 663 128	256 185 786	387 631 487
112-11	– FNAOT section locale	204 425 005	125 886 333	186 796 387	112 555 831	190 525 726
112-12	– FNAOT section générale	134 727 071	124 460 952	64 903 299	83 370 841	107 344 299
112-13	– Soutien aux Opérateurs	71 168 575	71 423 703	67 961 442	67 961 442	90 061 442
112-14	– 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contrats de ruralité et pacte État-métropoles		16 261 278		12 297 672	7 297 312
P147	Politique de la ville	545 939 924	545 799 057	578 689 489	578 689 489	615 657 504
147-01	– Actions territoriales et Dispositifs spécifiqu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	498 084 305	497 943 438	522 752 402	522 752 402	525 432 402
147-02	– Réhabilitation économique et emploi	33 455 619	33 455 619	40 917 087	40 917 087	40 205 102
147-04	– Rénovation urbaine et amélioration du cadre de vie	14 400 000	14 400 000	15 000 000	15 000 000	50 000 000
P162	Interventions territoriales de l'État	313 087 436	122 668 411	72 115 330	47 225 950	67 515 189
162-04	– Plans d'investissement pour la Corse	137 133 954	69 716 011	50 000 000	30 652 138	47 907 005
162-09	– Plan littoral 21	3 917 261	3 683 087	10 000 000	4 426 794	8 000 000
162-10	– Fonds interministériel pour la transformation de la Guyane	172 036 224	49 269 313	12 115 330	12 147 018	11 608 784
P135	Urbanisme, territoires et amélioration de l'habitat	225 871 652	229 258 072	241 034 909	241 034 909	250 858 752
135-07	– Urbanisme et aménagement	225 871 652	229 258 072	241 034 909	241 034 909	250 858 752
P119	Concours financier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à leurs groupements	2 180 528 853	1 744 079 783	1 978 000 000	1 982 024 439	1 978 000 000
119-01	– Soutien aux projets des communes et groupements de communes	1 979 818 634	1 457 169 945	1 768 000 000	1 613 303 800	1 768 000 000
119-03	– Soutien aux projet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200 598 300	102 470 480	212 000 000	153 350 433	212 000 000
119-09	– Délégation de soutien à l'investissement local exceptionnelle	111 919	184 439 358		216 370 206	110 893 552
P138	Emplois outre-mer	2 037 715 500	2 036 971 502	1 754 556 695	1 748 295 040	1 889 170 128
138-01	– Soutien aux entreprises	1 726 369 468	1 726 369 468	1 416 179 003	1 416 179 003	1 539 184 352

자료: 프랑스 정부(2023),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Amenagement du terroire.

다음으로 인종 간 평등 예산제도(racial equity budgeting)는 인종적 형평성 관점을 재정정책과 공공재정관리(PFM) 제도에 통합한 것이다.²⁸⁾ 예산과 정책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종 평등 예산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보다 지능적으로 설계하고 이행하여 특정 인구 계층에 대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남미 국가에서 장학금과 3차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인적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지만, 백인과 비원주민 인구에게 불균형한 혜택을 주고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시행 사례를 보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이 대통령 예산을 작성하는 OMB와 다음 5개 목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은 포괄적인 형평성 전략 실행 지원, 모든 미국인에게 형평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 식별, 기관 내의 형평성 팀에 자원 제공, 고객 체험 활동과 역량 요구 포함 등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는 시 부서가 인종 평등 행동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인종 평등 전략을 만들었고, 2020년에는 인종 평등을 예산 과정에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자원 배분을 안내하기 위한 연간 예산 제출서류의 하나로 모든 부서의 인종 평등 설문지가 포함되었다. 이 설문지는 기존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지출이 인종 평등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21년 워싱턴DC에서는 연방 기금, 보조금 사용 시 활용할 셀프 체크리스트(Racial Equity Budget Tool)를 개발하여 하위 기관들이 제출할 예산 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 산하의 인종 평등 사무소(Mayor's office of racial equity)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인종 간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표 II-12〉 워싱턴DC의 인종 간 평등 예산 체크리스트

예산 전반적 질문
인종 간 평등에 있어서 기관이 추구하는 우선과제는 무엇이며 차년도 예산안은 그 우선과제 실현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2-3개의 우선과제와 예산안이 가져올 개선에 대해 쓰세요.
어떠한 제약조건이 기관의 인종 간 평등을 개선에 방해가 됩니까? 차년도 예산안에서 그 제약조건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으세요.
예산의 개선에 대한 질문
어떠한 인종 간 불평등을 이 예산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까?(주거, 의료, 교육) 상세히 서술하세요.
이 예산사업을 통해 그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세요. (예: 인구데이터, 법적 조치에 따른 반응, 지역사회의 참여 등)
이 예산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유색 인종 스태프를 포함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서술하세요.
이 예산안이 잠재적으로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인종집단에게 돌아갈 지에 대해 서술하십시오(예: 신공항 부지 선정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소음 및 대기공해를 일으켜 인근 지역 거주민의 건강을 해침으로써 인종 간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출처: Mayor's office of racial equity(2024), Racial Equity Budget Tool.

III. 시사점

인지 예·결산제도는 범국가적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공동 사회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고 확산되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부로서 발전해 왔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를 통해 이탈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내각 정부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정부 수립 당시의 국제기구 정책 어젠다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제의 일부로서 젠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또는 삶의 질(Wellbeing)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인지 예·결산제도 방식 내에서 장애, 소득격차, 세대 간 평등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국제기구에서 인지 예·결산제도 시행 여부를 조사할 경우, 인지 예·결산제도의 정책목표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분적으로라도 시행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주요국의 기타 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 사례를 확인하고 도입 추진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나라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와 같은 양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주요국에도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국 법·제도의 다양성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성인지 예산 14개국, 환경인지 예산 11개국에 불과하였다. 이들 중 해당 정책의제에 대해 별도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도 성인지 예산 10개국, 환경인지 예산 5개국에 그쳤다. 또한 사후 성인지예산서, 즉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4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OECD 조사 결과는 보고하고 있다.²⁹⁾ 환경인지 결산서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은 국가가 작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의 조사 범위 내에서는 이탈리아가 2023년까지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 OECD(2023)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IMF(2021)에 따르면 멕시코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는 이들 국가를 제외하여 작성 및 공개된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의 법적 시행 근거, 별도 예·결산서 작성 사례가 미미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분배인지 예산, 장애인지 예산, 인구 및 세대인지 예·결산을 우리나라의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양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정책목표 관점에서 예산 단계의 재사업을 식별하거나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별도 예산서 또는 보고서를 예산순기에 맞추어 작성하는 경우는 있지만, 집행 이후에도 재무담당 부처 주관하에 해당사업에 대한 회계결산서가 연례적으로 발간되는 경우는 본 연구의 조사범위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관련 정책 분야 기본법,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인지 예·결산서의 종류 및 내용이 규정되며 예·결산서 부속서류로서 인지 예·결산서의 국회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

〈표 III-1〉 조사대상 인지 예산제도 예산서 사례

구분		분배 ¹⁾	장애 ²⁾	인구(청년)	국토균형발전
G7	미국	-	-	-	-
	일본	-	-	-	-
	독일	-	-	-	-
	영국	-	장애포용종합전략	-	-
	프랑스	경제사회재무보고서	-	-	정책현안보고서
	이탈리아	삶의 질 예산	-	삶의 질 예산	-
	캐나다	예산(GBA+)	예산(GBA+)	예산(GBA+)	-
기타 국가	뉴질랜드	웰빙예산	-	웰빙예산	-
	아일랜드	평등예산	-	-	-
	호주	-	포괄적장애전략	-	-
	스웨덴	분배정책보고서	-	-	-
	네덜란드	-	경제예산영향분석	-	-

주 1) OECD·조세재정연(2024), Addressing inequality by budgeting 에 사례 수록 국가 기준
 2) UNDP(2023), Leaving No One Behind: A Review of Policies Promoting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장애 전략은 2년 이상을 주기로 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
 3) 굵은 글씨는 해당 문서가 대국민 예산서 또는 첨부서류의 위상임을 의미

현행 및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논의에는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예·결산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차원의 문제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신규 예·결산제도 구축 시 제도 시행을 위한 정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노력, 비용 대비 기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산 편성 및 확정 단계에서 관련 사업을 식별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오해와 달리, 개별 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단위에서 작성 대상사업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뉴얼 작성, 소관부처 공무원 대상 교육, 이후 예·결산서 기본자료 작성, 취합에 이르는 세부 업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 예·결산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영향평가, 기본계획 과제 관리 등 타 정책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제도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해당 정책 목표의 추진을 위해 인지 예·결산제도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그 도입을 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체계 차원에서 회계관리적 관점보다는 목표 이행을 위한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인지 예·결산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사례를 검토한 국가들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재정순기 중 결산 단계는 회계검사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는다라는 의미보다 연간 정책성과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의원내각제 국가가 대부분인 사례들에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받도록 하는 절차 없이, 감사원 또는 회계검사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재무부 또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산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인지 예·결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입(input)지표의 집계와 결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기적 성과(outcome)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예·결산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 체계 차원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지양하고,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부표를 통해 일원화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와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각각 별도의 개별법인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양성

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별 법률과 별도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통해 예·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지 예·결산제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포함해 개별 기본법을 수립하려는 의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기본법, 국가재정·회계법 등 3개 법에 의한 체계를 국가재정법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경우, 2022년 개정을 통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 근거법이 아닌 동법 부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표체계 차원에서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따른 성과 및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출 및 예산 결정 시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완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경제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독립적인 부서인 경제정책과 분배부를 구축하여 가계조사, 복지조사 등 경제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각 제도별 예·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별, 장애, 소득불평등 등 경제·사회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개선 결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예산 결정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성과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용이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국가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여기에 기반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발전시켜 다양한 사회정책 의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과지표와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인지 예·결산서에 준하는 정보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실(2023.11.7.) “이병숙 도의원, 인구인지 예산제도 ‘예산과 정 전반’으로 확대 요구”
- 국회예산정책처(2023.10.),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12.),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4.4.),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 대한민국 정부(2024.5.31.),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_____,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 여성가족부(2023.8.),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I)
- Nicol, S.(2021), “OECD scan of equality budgeting in Ireland: Equality mainstreaming and inclusive policy making in action”,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21/1
- Australia Government(2021), Summary of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1
- Australia Government(2023),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
- Australia Government(2024.5.), Cost of living help & a future made in Australia-Budget 2024-25
- CBO(2024),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 Commonwealth of Australia(2024), Budget2024-25: Women’s budget statement
- CPB(2023),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budgetary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DPER(2022), Public Service Performance Reports

Fr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9), Green Budgeting in France
Government of Canada(2024), 2024 Budget: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Government of France(2023),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Amenagement du territoire
_____, Report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Government of Ireland(2023), Budget 2024: Beyond GDP - Quality of Life
Assessment

Government of New Zealand(2023), Child Poverty Report 2023

IMF(2021), Gender Budgeting in G20 Countries

Mayor's office of racial equity(2024), Racial Equity Budget Tool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 finanze(2023), ecorendiconto dello stato 2022

OECD(2023),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_____, Government at a Glance 2023

OECD/KIPF(2024), Ad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 Lessons from
Recent Country Experience

Sweden Ministry of Finance, 2021, economic gender equality

The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2022), FCDO's
Disability Inclusion and Rights Strategy 2022-2030

UK OBR(2024.3.),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부표 1〉 제21대 국회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안 16건 목록

*의안번호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 기준이며, 강훈식, 장경태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만 발의하였으므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총 14건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기후인지예결산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소영 의원안) 및 탄소감축성과예산서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안(맹성규의원안)은 기존 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변경안으로 보아 제외하였음

〈부표 1-1〉 인구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정일영(민) 외 11인 2122460	'23.6.2.	저출산 대응기금 예·결산서	-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음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서의 실효성 지적
윤준병(민) 외 13인 2121855	'23.5.9.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이중배(국) 외 10인 2110496	'21.6.1.	저출산고령화 예·결산서	- 저출산·고령화 개선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장경태(민) 외 10인 2108469	'21.3.2.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강훈식(민) 외 10인 2103529	'20.9.7.	세대인지 예·결산서	- 세대별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태영호(미) 외 11인 2101243	'20.7.1.	청년인지 예·결산서	- 청년사업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특정 연령대를 위한 분석·평가이므로 형평성 논란 존재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윤호중(민) 외 17인 2100497	'20.6.15.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	- 외국에서도 별도의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대 간 보고서 등으로 대체 (호주) 5년 주기로 재무부 장관이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세대 간 보고서 작성 (미국) 의회예산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장기예산전망 발표

〈부표 1-2〉 양극화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영진(민) 외 10인 2124909	'23.9.27.	소득재분배인지 예·결산서	- 소득불평등의 개선 효과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평가 해외 사례 부재
우원식(민) 외 14인 2124893	'23.9.27.	노동인지 예·결산서	- 노동기본권 등의 개선 영향 특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 마련 필요 - 노동인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 달성 가능
조정훈(시) 외 17인 2104266	'20.9.25.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서	- 소득양극화 효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분석틀 마련 필요

〈부표 1-3〉 지역 및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윤미향(무) 2121730	'23.4.28.	농어촌 인지예·결산서 신규 작성	-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평가 및 분석 실시 중 - 특정 분야에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우려 존재
전봉민(미) 2100719	'20.6.19.	국가균형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국가예산의 지역별 수혜 공개 후 불필요한 논쟁 발생 우려, 비효율 증대 - 지역 발전 연관성이 없거나, 국가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존재 -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에서 국가균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부재
김승남(민) 외 21인 2119831	'23.2.6.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서 신규 작성	-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사안의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 전체 종합분석 불필요 -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 영향 분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 -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 선행될 필요

〈부표 1-4〉 장애 관련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이용빈(민) 외 12인 2118580	'22.11.30.	장애인지 예·결산서	-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제도의 구체적 설계 필요 - 기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발생 - 현행 성인지 및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
최혜영(민) 외 10인 2116790	'22.8.5.	장애인지 예·결산서	

〈부표 1-5〉 규제개혁 인지 예·결산서 도입 의안과 검토 요지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 내용	
		도입대상 제도	검토의견 요지
김선교(미) 외 11인 2101666	'20.7.8.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서	- 규제가 법령 형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예·결산과 직접 연계하여 분석·평가하기 어려움 - 유사 목적 제도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공표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운영

<부표 2> 성인지 예결산제도 국가별 개요

1. 우리나라 및 G7 국가

		우리나라	G7		
			미국 (미운영)	영국 (민간이 일부 운영)	독일 (비정기 성과결산)
문서 명칭 예결산서와의 관계	예산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	-	-
	결산	성인지결산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	-	성평등보고서 (성과결산, 내각 임기마다 1회 작성, 공개)
근거법령	재정 관련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	-	-
	대상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시행 (구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제정)	-	평등법(Equality Act 2010) 149조, 공공부문의 평등의무 * 광의의 성인지예산 도입의무 포함	보편평등법 2006 (Allgemeines Gleichheitsgesetz), 연방부처의 일반적 절차규칙 제1장 2항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	-	-
	결산	제출	-	-	임기마다 1회 제출
도입시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 마련 2010년 국가재정법개정,시행	-	2006년 평등법 제정 1989년 여성예산그룹(WBG) 창립	2011년부터 임기마다 1회 성평등보고서 제출
작성주체		각 중앙부서	-	정부 부처는 작성하지 않으며 NGO 단체인 여성예산단체 (Women's budget group, WBG)가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논평 발표	2019/20년도 성과 결산보고서 내 “성 주류화” 항목: 연방재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참여
대상		성평등 관련 사업 일반예산사업 중 성별분석 가능사업, 기금 포함	-	-	직업 선택 및 교육 제공 관련 양성평등 영향평가

G7			
프랑스 (예산만 운영)	이탈리아 (예·결산 운영)	캐나다 (예산 및 성과결산)	일본 (간이 예·결산 운영)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정책현안보고서 예산안 부속서류 (annex)	성별관점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른 예산 지출 예산안 첨부서류 (attachment)	새로운 예산 조치의 성별 및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성평등백서 부록 2p 분량 표
-	성별 관점에 따라 재분류된 예결산계정	부처별 연간성과보고서 (성과 결산)	위 성평등백서 부록에 결산내용도 포함 별도 2p분량
예산법 2019 Article 179-6의 2항 * 연도별 예산법 제정에 따라 조문번호도 변경	Law 2009/196 제38조, Legislative decree 2018/116 제8조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리령 2017	재무행정법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
실질양성평등법 2014-873	-	성별예산법 20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성평등사회를 위한 기본법 1999(Basic Law for Gender Equal Society)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성평등보고서)
-	-	-	제출 (성평등보고서)
2017년	예산 2010년 결산 2023년 (시범도입)	2018년	2009년
재무부	각 중앙부처	재무부	내각부 남녀공동참가국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양성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지출, 당해연도 성평등 예산의 영향에 대한 분석, 과세의 성 차별적 영향 분석	재정지출 및 조세정책 조치 성별 영향 관점에 따라 재분류	성별과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 고려한 예산 결정 1. 새로운 예산 조치에 대한 보고서 2.세금 지출 분석 3. 프로그램 분석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투자 및 융자계정의 프로그램

2. 기타 오세아니아, 북유럽 국가

		기타 국가		
		호주 (예산만 운영)	뉴질랜드 (예산만 운영)	스웨덴 (성 주류화 예산만 운영)
문서 명칭	예산	여성 인지 예산서	성별예산 * 웰빙예산 내 성별예산 파트	예산서 BudGe (성평등 분배분석도구)
	결산	-	-	-
근거 법령	재정 관련	예산 정직 헌장 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공공재정법 1989 (Public Finance Act 1989) - 예산정책성명, 웰빙보고서 * 웰빙보고서는 4년 이내 주기 작성	2011년 예산법 (budget act 2011:203)
	대상 관련	성차별법안 1984 (Sex Discrimination Act 1984)	-	성주류화 전략 1994 (Government strategy on Gender mainstreaming)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제출	제출
	결산	-	-	-
도입시기		1984/1985회계연도 시작	2023년부터 웰빙예산에 포함 * 웰빙예산은 2019년부터 작성 * 2021년 준비 및 시범사업	2011
작성부서		재무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여성부(Ministry for Women) 재무부(the Treasury)	성평등부(Division for gender equality),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대상		여성대상폭력, 보수/무보수 노동, 경제적평등과 안정, 건강, 직장 내 리더십 및 의사결정 분야에 대한 여성평등예산 포함	'23년 기준 15개 기관 대상 27개 이니셔티브의 성별예산 - 가족, 임신부, 한부모, 마오리족, 태평양 여성, 장애 여성, 일하는 여성, 원주민 학생 등 대상사업	(참고) 별도의 장(chapter)이나 문서 없이 예산상 재정사업 효과를 포함하여 남, 여 각각의 경제적 자원 배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예산서 전반에서 서술하는 방식

* 인터넷 자료 수집을 통해 법제도 현황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취득한 자료의 발간 시점과 현행 법제도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기타 국가	
아일랜드 (‘17년 시범사업 1회 시행)	오스트리아(참고) (별도 성인지예산서 없이 연방예산에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 포함)
평등예산	연방예산 보고서 (Bundesfinanzgesetz)
-	연방예산 보고서 (Bundesfinanzgesetz)
연정 공약의 일환으로 시범적 평등 예산 이니셔티브 도입	오스트리아 헌법 제13조(2009) (Art. 13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오스트리아 헌법 제51조(2013) (Art. 51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	예산법 2013 (the organic budget law)
-	10월 의회(the parliament)에 예산안(the budget draft) 제출
-	연방총리실(Federal Chancellery)에서 성과점검 실시 후 의회 보고
2017년(2018 예산 대상)	2013년 성별 대응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도입
공식적 실무 그룹 없음. 재무부, 공공지출 및 개혁부, 사법 및 평등부, 고용 및 사회 보호부 등 협력	재무부 성평등주류화/성평등 예산을 위한 부처 간 실무 그룹 (IMAG GMB)
(참고) 시범사업 시 성별이 주요 축. 6개 부서 6개 평등 예산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견습, 스포츠 참여, 과학연구 대표, 영화 및 스크린 대표, 흡연 및 육아	각 부처별 예산 중 평등 목표(Gleichstellungsziel)의 내용의 사업 (참고) 2차 예산개혁을 통해 예산법(the organic budget law)에 따라 성별 대응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도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구현을 위해 성별 수요 평가(gender needs assessment) 실시

<부표 3> 환경인지 예결산제도 국가별 개요

1. 우리나라 및 G7 국가

		우리나라	G7		
			미국 (미운영)	영국 (미운영)	독일 (기후변화기금 예·결산만 운영)
문서 명칭 예결산서와의 관계	예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	-	-
	결산	온실가스감축 인지결산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	-	-
근거법령	재정 관련	예산: 국가재정법제27조 결산: 국가회계법제15조의2	-	-	
	대상 관련	탄소중립기본법(2021)	-	기후변화법(2008)	연방기후변화법 (Bundes-Klimaschutzgesetz, 2019)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	-	-	제출
	결산	제출	-	제출(탄소배출예산제에 따른 연간 배출량 보고서)	지출검토에 일부 포함 (2021/2022, 2022/2024 주기 제출)
도입시기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 시 근거 마련 2023년 예산서부터 작성	-	2008	2020년
작성주체		각 중앙부서	-	기후변화위원회 (Climate Change Committee, CCC)	재무부 연방정부
대상		국가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온실가스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 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	국가탄소배출량	기후변화기금 사업
참고			-	탄소배출예산제(Carbon Budget) 시행에 따라 결산 시에 탄소배출량보고서 의회 제출	연례기후보고서: 연방정부가 매년 작성. 온실가스 배출, 기후보호 조치 이행 상태, 온실가스 감소량 포함 지출검토 보고서: 재무부 중심 실무그룹이 주제 선정해 비정기적으로 작성

G7			
프랑스 (예산만 시행)	이탈리아 ('24년 현재 예결산 중단)	캐나다 (예산 및 성과결산)	일본 (녹색채권기금 예결산만 운영)
녹색예산서(Budget vert) 예산안 첨부서류	환경예산서(Ecobilancio) 예산안 설명자료 부속서류(annex)	새로운 예산조치의 성별 및 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
-	환경결산서(Ecorendiconto) 일반국가보고서 부속서류	부처별 연간성과보고서 (성과결산)	-
예산법 2019 Article 179-6의 2항 * 연도별 예산법제정에 따라 조문번호도 변화	Law 2009/196 제36조 6항 공공회계재정법 2009 (Law of Accounting and Public Finance) 11호	재무행정법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
2004년 환경헌장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에너지법 (Code de l'énergie - Article L100-1)	유엔환경보호활동분류 (the UN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CEPA) 유엔자원관리활동분류 (the UN Classification on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CReMA)	캐나다 성별 예산법 2018 (Canadian Gender Budgeting Act) 캐나다 넷제로 배출 책임법 2021 (the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CNZEEA)	-
제출	제출	제출	-
-	제출	미제출	-
2019년 국가재정법 개정 시 근거 마련 2020년 예산서부터 작성	2009년	2021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도입으로 예산 영향 보고서에 환경 요소 포함)	2021년
환경부	각 중앙부처	재무부	재무부
에너지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공공에너지 서비스 요금의 변화, 재생에너지 촉진 조치,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 조사	환경적 성격이나 내용을 가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 및 결과 (전 부처 대상)	환경과 사람, 생태보전과 환경관리와 관련된 재정사업	녹색전환채권 발행금액 및 이를 통해 조달하는 친환경 사업
			녹색전환채권 (GX채권) 기금제정에 대한 예·결산만 시행

2. 기타 오세아니아, 북유럽 국가

		기타 국가			
		호주 (미운영, 기후변화설명서)	뉴질랜드(기후비상대응기금 예산만 운영)	스웨덴 (예산 및 성과결산)	아일랜드 (예산 및 성과결산)
문서 명칭 예결산서와의 관계	예산	-	웰빙예산 내 기후변화 파트 (Wellbeing Budget: Climate Change)	환경보고서(Climate report) 예산안 부속서류(annex) *위 서류에 환경의 질 목표에 대한 개선사항(성과결산)도 포함됨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정예산의 기후 및 환경 지출 (Green Budgeting in REV)
	결산	-			
근거 법령	재정 관련	예산정직헌장 법1998 공공관리 및 업무성과법 재정관리책임법	공공재정법 1989	예산법(Budget Act 2011) 의회법(The Riksdag Act 2014)	아일랜드 헌법 (Article 28 of the Constitution of Ireland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2)
	대상 관련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22)	기후변화대응법 2002 배출감소계획 2022	기후변화법 2018 (Climate Act of 2018)	기후행동 및 저탄소 개발법 2015
국회 제출 여부	예산	제출(연례기후변화설명서, 예산안에 포함)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제출	의회(Riksdag) 제출	관련 국회 위원회에 보고
	결산		-	-	
도입시기		2022년	2022년	2018년	2019년
작성부서		재무부 기후변화에너지환경물부	재무부 (the Treasury)	각 부처 작성 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기후변화기업부(Ministry of Climate and Enterprise) 송부	공공지출 및 개혁부 재무부
대상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현황, 관련 국제적 동향, 목표달성을 위한 연방 정책의 효용성 평가	기후비상대응기금 사업	기후 및 환경의 질 목표 16개의 달성을 위해 수립된 실행계획 이행에 위한 사업 및 이행 정책 포함	저탄소, 기후 회복력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재정지출
참고			웰빙보고서는 4년 이내 주기로 작성, 기후변화 파트는 2023년도 기준 10p. 분량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추가 조치에 대한 사항 등 포함	

* 인터넷 자료 수집을 통해 법제도 현황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취득한 자료의 발간 시점과 현행 법제도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발 간 월 2024년 11월

발 행 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참 여 진 장윤정 부연구위원, 지은초 부연구위원

편 집 재정정보분석센터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8층

(Tel. 02-6908-8200)

인 쇄 처 디자인아이 Tel. 02-6358-2124

I S B N 979-11-91094-35-0

문 의 재정정보분석센터 02-6908-8200

yjchang@fis.kr, anncho@fis.kr

